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



김동엽, 이동근 지음 서혜민 자문



목차

머리말 | 세금을 알아야 노후가 더 잘 보인다 8

1

연금 적립과 세금

- 1 국민연금 | 임의가입, 추후납부, 반납할 때도 소득공제를 받나요? 18
- 2 연금계좌 | 50세 이상이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나요? 27
- 3 연금계좌 | ISA 만기 자금을 이체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37
- 4 연금계좌 | 맞벌이 부부의 연금계좌 활용, 누가 어디에 얼마나 저축해야 하나요? 45
- 5 연금계좌 | 공무원도 연금계좌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51
- 6 연금보험 | 연금보험 비과세 혜택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57
- 7 퇴직연금 | 대표이사나 임원은 퇴직금을 얼마나 받고,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64
- 8 퇴직연금 | 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세 부담이 확 줄어든다는데 맞나요? 77

2

연금 운용·중도인출과 세금

- 9 국민연금 |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나요? 88
- 10 연금계좌 | 운용 중에 이자·배당을 받아도 세금을 안 낸다는데 맞나요? 94
- 11 연금계좌 | 해외 ETF에 투자하면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103
- 12 퇴직연금 |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중도인출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112
- 13 연금보험 | 중도해지하거나 중도인출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20

3

연금 수령과 세금

- 14 국민연금 | 노령연금을 받을 때는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128
- 15 퇴직연금 |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140
- 16 퇴직연금 | 중간정산한 사람은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다고 하던데 맞나요? 151
- 17 퇴직연금 | 퇴직급여 수령과 세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158
- 18 연금계좌 |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얼마나 내나요? 165
- 19 연금계좌 | 한 해에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73
- 20 연금계좌 | 연금을 받을 때 적립금은 어떤 순서로 인출되나요? 185
- 21 연금보험 | 즉시연금 가입자도 연금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90
- 22 연금계좌 | (구)개인연금저축 가입자도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내나요? 196

4

연금의 상속·증여와 세금

- 23 국민연금 | 유족연금은 누가 받고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206
- 24 연금계좌 | 가입자가 사망해서 배우자가 승계해도 불이익은 없나요? 214
- 25 연금보험 | 계약자를 변경해도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나요? 219
- 26 연금보험 | 연금을 상속하면 세금은 누가 얼마나 내나요? 225

부록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236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36
- 법인세법 24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42
- 소득세법 244
- 조세특례제한법 270

머리말

세금을 알아야 노후가 더 잘 보인다

학창 시절에 방학 숙제를 차일피일 미루다 개학이 다 되어 몰아서 했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어디 학생 시절에만 그랬을까?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다. 서둘러 끝낼 수 있는 일도 처음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하고 여유를 부리다가 결국 마감 시한이 임박해서야 ‘아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하고 서두르곤 한다. 몇 번 이런 일을 겪고 나면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챙겨야지’ 하고 다짐하지만, 별다른 강제 장치가 없는 한 같은 일이 반복되곤 한다.

노후 준비를 앞당기는 당근과 채찍

노후 준비도 이와 비슷하다. 다들 평안한 노후를 희망하지만 정작 노후 대비 저축은 차일피일 미룬다. 아직은 준비할 시간이 많다고 여유를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장 집세 내고 자녀 학원비 내고 나면 저축할 여력이 없어 엄두가 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어제의 내일이 오늘인 것처럼 오지 않을 것 같은 노후도 언젠가 눈앞에 닥쳐온다는 사실을.

노후 대비 저축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도록 하려면 어느 정도 유인이 필요하다. 대표적인 유인 중 하나가 ‘세제 혜택’이라고 할 수 있다. 노후 대비 연금과 세금을 묶어서 봐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대다수 연금이 장기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비과세 같은 세제 혜택을 준다. 대신 중도에 적립금을 인출하면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따르거나, 아예 일정 기간 적립금을 찾아 쓸 수 없게끔 강제하기도 한다. 말하자면 ‘당근과 채찍’ 전략인 셈이다.

적립부터 인출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연금 절세 전략

과거에는 연금 관련 세제 혜택이라고 하면 적립이나 운용 단계에서 비과세나 세액공제만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세금에 대한 관심도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 문제로 점차 옮겨 가는 중이다. 이는 대다수 연금 상품이 적립할 때 절세 혜택을 주는 대신 이를 찾아 쓸 때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해주는 대신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가입자도 저축 금액을 세액공제 받는다. 그리고 일반 금융 상품과 달리 이자나 배당이 발생하더라도 연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대신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적립할 때뿐만 아니라 연금을 수령할 때도 절세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

이 책을 적립부터 인출까지 생애주기에 맞춰 4부로 구성한 것도 이 때문이다. 먼저 1부에서는 3층 연금을 적립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주로 다루고 있으며, 2부에서는 연금 자산에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 방법과 중도인출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3부에서는 연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세 문제를, 4부에는 연금 자산의 상속과 증여와 관련된 이슈를 다룬다.

노후 준비, 절약보다 전략이 중요하다

이 책은 2016년 8월 무렵 『연금과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처

음 출판되었다. 당시만 하더라도 연금과 관련한 제도와 세금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책은 드물었다. 그리고 적립부터 인출까지 생애주기별로 연금 제도와 세금을 접근하려는 시도도 처음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절세와 노후 준비에 관심을 가진 직장인과 퇴직자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었다. 하지만 연금 관련 제도와 세제가 바뀌면서 책 내용을 조금씩 손볼 수밖에 없었다.

2018년에 개정판을 내면서 책 제목을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로 변경했다. 당시 사회적으로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이슈가 됐다. 임금피크를 맞은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손해 보지 않으려고 중간정산을 하기도 하고, DB형에서 DC형 퇴직연금으로 갈아타기도 했다. 이 밖에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제도와 세제 개편이 이뤄졌다. 이 밖에 고액의 퇴직급여를 받는 퇴직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퇴직소득세를 개편하고, 고소득자의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하고, 연금보험 비과세 한도를 축소했다.

2020년에 2번째 개정판을 냈다. 당시 화두는 ‘적립에서 인출로’ 전환이었다. 2020년은 베이비 부머(1955~1963년생)

의 말이 격인 1955년생은 기초연금, 베이비 부머의 대표 격인 1958년생은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해다. 베이비 부머가 본격적으로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발걸음도 급해졌다. 먼저 50세 이상자의 연금계좌 가입자의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 원 늘렸다. 그리고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체 금액의 10%(300만 원 한도)를 추가로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처음 책을 낼 때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세법과 제도 변화를 반영하다 보니 2년에 한 번 개정판을 내게 됐다. 2022년 개정판을 내면서 주목한 것은 ‘저축에서 투자로’ 연금 재원의 이동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개인 투자자에게 붙어닥친 주식 투자 열풍이 연금으로 옮겨 붙었다. 우선 예적금 등 원리금 보장 상품에 머물러 있던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펀드와 ETF로 옮기려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그리고 해외펀드와 ETF에 투자하는 이들 중에서 연금계좌를 절세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들도 늘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판을 내면서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에 투자할 때 세금 관계를 다룬 장을 추가했다.

한정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한정되지 않은 노후의 삶을 준비하려면 절약^{節約}만으로 부족하다. 전략^{戰略}이 필요하다. 연금제도가 세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알아야 연금을 더 잘 알 수 있고, 노후 준비 전략도 더 잘 세울 수 있다. 아무쪼록 독자 여러분이 노후 준비를 하는 데 이 책이 작은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란다.

* 본문에서 언급하는 세율은 별다른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모두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1

연금 적립과 세금

- 1 국민연금 | 임의가입, 추후납부, 반납할 때도 소득공제를 받나요?
- 2 연금계좌 | 50세 이상이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나요?
- 3 연금계좌 | ISA 만기 자금을 이체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4 연금계좌 | 맞벌이 부부의 연금계좌 활용, 누가 어디에 얼마나 저축해야 하나요?
- 5 연금계좌 | 공무원도 연금계좌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6 연금보험 | 연금보험 비과세 혜택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 7 퇴직연금 | 대표이사나 임원은 퇴직금을 얼마나 받고,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 8 퇴직연금 | 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세 부담이 확 줄어든다는데 맞나요?

1

임의가입, 추후납부, 반납할 때도 소득공제를 받나요?

국민연금

강수연 씨(55세)는 IMF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무렵 퇴직했다.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하지 못한 탓이 크지만, 자녀 출산과 양육 문제도 퇴직을 결정하는데 한몫했다. 그 무렵 강 씨는 국민연금공단에 반환일시금을 신청해 수령했다. 반환일시금이란 직장에 다니며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에 수령하는 제도인데, 당시만 해도 퇴직자는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을 신청해 수령할 수 있었다.

당시 강 씨는 목돈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퇴직자 중 상당수가 반환일시금을 신청하기에 따라서 신청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 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남편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조금 후회가 된다. 남편의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시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지 않고 그대로 뒀더라면, 퇴직한 다음에도 계속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입했다더라면 어땠을까?

전문가와 상담했더니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 공단에 반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임의가입 신청을 해서 지금부터 60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고 했다. 게다가 퇴직한 다음 임의가입하기 직전까지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도 추후납부할 수 있다.

반환일시금 반납, 임의가입, 추후납부 등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나가면 강 씨도 남편만큼은 안 되어도 웬만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궁금한 것은 세금이다. 직장에 다니는 남편은 다달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는 것 같은데, 전업주부인 강 씨도 임의

가입, 반납 및 추후납부로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 제도를 도입한 다음 계속해서 가입 대상을 확대해 왔다. 현재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의무가입 대상이다. 이 중 사업장에 소속된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다.

예외도 있다. 군인·공무원·교사 등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 27세 미만인 군인과 학생도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다. 이 밖에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가 되기 전에 희망한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임의가입자’라고 한다. 전업주부인 강수연 씨도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임의가입 제도를 활용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60세 이

후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하나?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할까?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에서 1,000원 미만 금액을 절사한 것이다.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는데 매년 7월에 정해 이듬해 6월까지 적용한다.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 사이에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33만 원이고, 상한은 524만 원이다.

연금보험료율은 9%이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이 400만 원인 사람은 소득의 9%에 해당하는 36만 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다만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나머지 절반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text{연금보험료} = \text{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times \text{연금보험료율}$$

그렇다면 임의가입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할까?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와 달리 전업주부와 학생·군인은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다. 그래서 보험료 상한과 하한을 법으로 정해 두고 이 범위 내에서 임의가입자가 납부할 보험료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은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결정된다.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한다. 적용 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적용되는 값은 100만 원이다. 따라서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은 100만 원의 9%에 해당하는 9만 원이다.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은 다른 국민연금 가입자와 같다. 현재 임의가입자가 납부할 수 있는 월 최대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인 524만 원에 연금보험료율 9%를 곱해 산출한 47만 1,600원이다. 임의가입자는 9만 원부터 47만 1,600원 사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금액을 정해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다.

임의가입자도 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이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공제받지만, 사업장가입자는 회사가 지원한 부분은 빼고 본인이 직접 부담한 보험료만 소득공제를 받는다. [소득세법 제51조의3①](#)

강수연 씨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면 매달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종합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강 씨처럼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임의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종합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는 없을까? 이것 또한 불가능하다.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만 대상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소득공제를 받는데, 임의가입자만 못 받으면 억울하지 않을까? 꼭 그렇지는 않다. 임의가입자가 과세 기준일(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 중에서 소득공제 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기준금액에서 빼준다. 과세 기준일 이후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보험료를 ‘과세제외기여금’이라고 하는데, 과세기준금액보다 과세제외기여금이 더 많으면 그다음 과세기간 간의 과세기준금액에서 빼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③](#)

추후납부 보험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민연금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때는 납부 예외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입한 다음 출산이나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어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업주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납부예외기간’이나 ‘적용제외기간’에 내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추후납부’라고 한다. 최장 119개월에 대한 보험료까지 추후납부가 가능하며 추후납부로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노령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그러면 추후납부 보험료도 소득공제 대상일까? 이는 국민연금 가입 유형에 따라 다르다. 먼저 강수연 씨와 같은 임의가입자는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다.

임의가입 때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는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과세기준금액에서 빼준다. 하지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추후납부를 할 때는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이번에는 반환일시금에 대해 살펴보자.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 60세가 됐는데도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그때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그렇다면 60세 이전에 반환일시금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을 받을 사람이 없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1999년 이전에는 60세가 되기 전에도 퇴직하고 1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안 된다.

1999년 이전이면 IMF 외환위기로 구조조정이 한창일 때다. 당시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떠난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강수

연 씨처럼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 그런데 1999년 이전에 수령해 갔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는 사람이 최근 늘어나고 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과거 소득 대체율이 높았던 가입기간을 회복해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반납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하기 시작한 것이 2002년부터인데, 반납하는 보험료는 1999년 이전 것이기 때문이다.

2

50대 이상이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나요?

김규한 씨(52세)는 올해 부장으로 승진했다. 승진은 기쁘지만, 지금껏 회사를 다닌 날보다 앞으로 다닐 날이 적게 남았다고 생각하니 묘한 기분이 든다. 여태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 슬슬 노후 준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승진해서 월급이 오른 만큼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므로 절세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노후 준비와 절세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이용하면 가능하다. 그렇다면 연금저축과 IRP에는 누가 가입할 수 있고, 어느 쪽을 선택해야 더 많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연금계좌를 이용하면 노후 준비와 절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이들 상품에 가입해 저축하면 연말정산 때 저축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립금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연금저축과 IRP에는 누가 가입할 수 있고, 세제 혜택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자.

누가 가입할 수 있나?

먼저 연금저축부터 살펴보자. 연금저축은 가입 대상에 제약이 없다. 소득이 있든 없든,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직장인이든 은퇴자이든, 공무원이든 군인이든 교사이든,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아니든 누구나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 있다. 누구나 가입은 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 혜택까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어디까지나 근로자나 자영업자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

연금저축 이외에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가는 금융 상품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다. IRP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퇴직연금 제도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퇴직연금은 크게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급여(DB)형과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급여를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이 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본인 명의로 된 퇴직 계좌를 가지고 있다.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치 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을 근로자 명의로

된 퇴직 계좌에 입금해 준다. 이는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 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하 중기퇴직연금) 제도도 마찬가지다. 근로자는 이렇게 이체된 자금을 직접 운용해서 퇴직할 때 수령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희망하면 DC형 또는 중기퇴직연금 가입자는 본인의 퇴직 계좌에 자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데, 이렇게 추가 저축한 금액에도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기존 퇴직 계좌에 추가 적립하는 근로자는 많지 않고, 금융회사를 찾아 별도의 IRP를 개설한 다음 저축한다.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본인 이름으로 된 퇴직 계좌가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금융회사에서 별도로 IRP를 개설해야 한다.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나 되나?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형, IRP 등)을 합쳐 ‘연금계좌’라고 한다. 그러면 연금계좌에는 매년 얼마나 저축할 수 있을까? 연금계좌에 한 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800만 원이다. 여기

에 ISA 만기 자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하지만 저축한 돈을 모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 종류, 가입자의 소득 크기 및 연령에 따라 다르다. 먼저 연금저축에만 가입하면 아무리 저축을 많이 해도 연간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나마 소득이 많으면 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종합소득이 1억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 2,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는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소득 크기에 상관없이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퇴직연금에 추가로 저축하면 어떻게 될까? 저축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날까? 그렇지는 않다. 연금계좌를 합산해 저축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이고,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이다. 여기에 ISA 만기 자금을 연금 전환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은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①②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50세 미만)



50세 이상은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은 50세 이상 거주자의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200만 원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연금저축에만 가입한 사람은 연간 최대 600만 원, IRP를 이용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년퇴직을 앞둔 50대가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센티브를 준

것이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 2,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와 당해 연도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게는 이 같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 조세특례 제한법 제86조의4

저축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또한 소득에 따라 다르다. 종합소득이 4,0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500만 원)보다 적으면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저축 금액의 16.5%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준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저축 금액의 13.2%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최대 환급 세액을 산출한 것이고, 실제 납부한 세금이 산출된 금액보다 적으면 환급 세액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면 김규한 씨(52세)가 IRP에 900만 원을 저축했을 때 최대 환급 세액을 계산해 보자. 김규한 씨에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은 없고 총 급여가 5,500만 원이 안 된다면 저축 금액 900만 원 전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세액공제율도 16.5%이므로, 김규한 씨는 연말정산 때 최대 148만 5,000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규한 씨의 총 급여가 5,5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 사이

라면 세액공제율이 13.2%로 낮아진다. 따라서 저축 금액 900만 원을 전부 공제받아도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최대 118만 8,000원이다. 김 씨의 총급여가 1억 2,000만 원을 넘으면 고소득자에 해당돼 900만 원을 저축해도 7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세액공제율이 13.2%이므로 환급 세액은 최대 92만 4,000원이다.

2022년 50세 이상 거주자가 연금계좌로 받을 수 있는 최대 환급 세액

종합소득 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세액 공제율	연간 납입 한도	세액공제 한도	최대 환급 세액
4,0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	16.5%	1,800만 원	900만 원	148만 5,000원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5,500만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이하)	13.2%		900만 원	118만 8,000원
1억 원 초과 (1억 2,000만 원 초과)	13.2%		700만 원	92만 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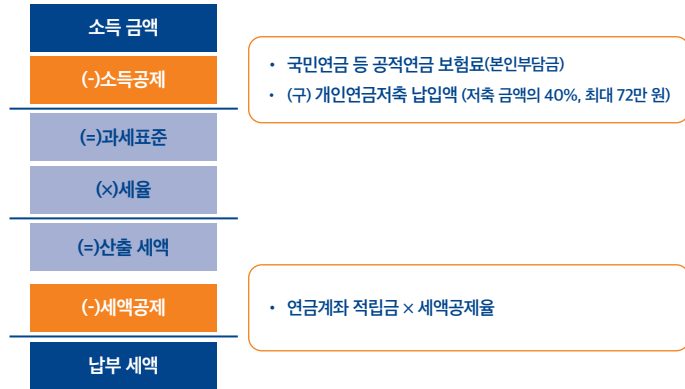
* ISA 만기 자금 연금계좌 이전 시 세액공제 한도 최대 300만 원 추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을 알려면 세금이 산출되는 과정을 보면 된다. 다음의 그림에서 보듯이,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한다. 과세표준은 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뺀 것이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덩달아 세 부담도 줄어든다. 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누진세율(6~45%, 지방소득세 별도)을 적용한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득공제 금액이 같더라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는다. 연금과 관련해서는 납세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납부한 보험료와 (구)개인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 (연간 최대 72만 원)가 소득공제 대상이다.

예전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형, IRP)에 추가 납입한 금액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었다. 하지만 소득공제 제도가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 세액공제로 바꿨다. 세액공제란 이미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기 때문에 누진세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연금저축과 IRP와 같은 연금계좌에서는 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소득 크기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종합소득이 4,000만 원(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세액공제 대상 저축 금액의 16.5%,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13.2%에 해당하는 세금을 환급받는다.

소득세 산출 과정



과세표준과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

* 지방소득세 별도

3

ISA 만기 자금을 이체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동근(48세) 씨는 조만간 만기가 돌아오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적립금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고 있다. 이씨가 ISA에 가입한 것은 5년 전의 일이다. 당시 해외펀드에 투자하고 있던 이씨는 세금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다. 과거에 해외펀드 투자 수익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펀드에 투자해서 얻은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원천징수세율 15.4%)한다. 그리고 한 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 과세하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한다. 따라서 해외펀드에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은 좋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런데 ISA에 가입하고 여기서 해외펀드에 투자를 하면 이 같은 우려를 상당 부분 덜 수 있다. 왜냐하면 ISA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은 2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200만 원을 초과해서 얻은 수익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낮은 세율(9.9%)로 분리과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이씨는 ISA를 통해 해외펀드에 투자하고 있다. 조만간 만기가 도래하는데, ISA 만기 자금을 지금처럼 해외펀드에 투자하면서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가 국내에 처음 출시된 것은 2016년 3월 무렵이다. 출시 당시 ISA는 ‘만능 통장’으로 불리며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적금-펀드-ELS 등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데다 절세 혜택까지 주어졌기 때문이다. ISA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은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 비과세 한도 초과 수익은 9.9%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이 같은 장점이 부각되면서 2016년 한 해에만 가입자를 240만 명이나 끌어 모았다. 하지만 아쉬운 면도 있었다. ISA 내에서 다양한 투자상품을 제공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대다수 가입자는 적립금을 예적금으로 운용하고 있었다. 2020년 연말 기준으로 ISA에 투자한 자금 중 73.8%가 예적금에 맡겨져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에 중개형 ISA를 새로 도입했다.

종전에는 신탁형과 일임형 두 종류만 있었다. 신탁형은 투자자가 구체적으로 운용 지시를 해야 하지만, 일임형은 투자자가 구체적인 운용 지시를 하지 않고 가입할 수 있다. 중개형은 투자자가 직접 운용한다는 점에서 신탁형과 유사하다. 그러나 국내 상장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지만 예적금은 가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그리고 중개형 ISA는 증권사에서
만 가입할 수 있다.

ISA 주요 내용

구분	내용
가입 자격 계좌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세 이상(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 거주자 - 직전 3개년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1명당 1계좌만 개설 가능
납입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2,000만 원, 최대 1억 원까지 납입 가능(납입 한도 이월 가능) - 단, 기존 소득공제 장기 펀드, 재형저축 계약 금액 차감 후 가입 가능
편입 가능 금융 상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 - 주식: 국내 상장 주식, 국내 상장 리츠 - 펀드: 집합투자증권, 국내 상장 ETF - 파생결합증권: ELS, DLS, ELB, DLB - 예금성 상품: 예금, 적금, 예탁금, 예치금, RP
의무가입기간	3년
중도인출	납입 원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로운 중도인출 허용
세제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좌 내 상품 간·기간 간 손익 통산 후 순소득에 대해 - 200만 원까지: 비과세 - 200만 원 초과 금액: 9.9% 세율로 분리과세 서민형 가입자(근로소득 5,000만 원,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및 중 합소득이 3,800만 원 이하 농어민의 경우 계좌 내 순소득에 대해 - 400만 원까지: 비과세 - 400만 원 초과 금액: 9.9% 세율로 분리과세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ISA 가입자는 한 해 2,000만 원씩 최대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그리고 연간 납입 한도를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로
이월할 수 있다. 의무 납입기간은 3년이다. 의무가입기간이 지
났으면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
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만기(의무가입기간)가 지난 다음 수령
한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에는 한해 최대 1,800만 원까
지 납입할 수 있는데, 이와 별도로 ISA 만기 자금을 이체할 수
있다. 그리고 연금계좌로 이체한 금액의 10%(한도 300만 원)를
추가 세액공제 해준다. 만기 자금 중 일부만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는데, 3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최소한 3,000만
원 이상은 이체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ISA 만기 자금 이체분을 포함한 연금계좌 납입 및 세액공제 한도

구분	내용
납입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1,800만 원 + ISA 만기 자금 수령액 - 만기 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내 이체(일부 이체 가능)
세액공제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계좌 납입 금액(한도 700만 원) + ISA 전환 금액의 10%(300만 원 한도) * 50세 이상자는 200만 원 추가(2022년까지)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자. 올해 이동근 씨가 ISA 만기 자금으로 5,000만 원을 수령했다면, 이동근 씨는 올해 연금계좌에 최대 6,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는 본래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 1,800만 원에다 ISA 만기 자금 수령액 5,000만 원을 더한 것이다.

이번에는 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해 보자. 올해 이동근 씨가 IRP에 700만 원을 납입했고, 이와 별도로 ISA 만기 자금 중 3,000만 원을 이체했다고 해보자. 먼저 연금계좌 납입 금액이 3,700만 원이고, 이동근 씨가 48세이므로 7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ISA 전환 금액(3,000만 원)의 10%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더하면 1,000만 원이 세액공제 한도가 된다. 따라서 이동근 씨가 올해 IRP에 납입한 3,7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2,7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돈으로 분류된다.

만약 이동근 씨가 ISA 만기 자금 중 3,000만 원을 IRP에 이체하고, 추가로 저축한 금액은 없다고 해보자. 이 경우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때도 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 원이다. 따라서 납입 금액 3,00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돈으로 분류된다.

이번에는 이동근 씨가 ISA 만기 자금 중에서 200만 원만 IRP에 납입하고, 따로 저축한 금액은 없다고 해보자. 이 경우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200만 원에다 ISA 전환 금액(200만 원)의 10%인 20만 원을 더한 220만 원이 세액공제 한도이다. 하지만 IRP에 납입한 금액 자체가 200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는 200만 원만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어떻게 되나?

앞서 이동근 씨가 IRP에 ISA 만기 자금 중 3,000만 원과 추가

로 700만 원을 저축한 경우로 돌아가보자. 이 경우 IRP에 납입한 3,7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세액공제 받고, 나머지 2,700만 원은 세액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돈으로 분류된다고 했다. 이렇게 세액공제 받지 않고 납입한 돈은 이후 연도 납입 금액으로 전환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을 인출할 때는 그것이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4

맞벌이 부부의 연금계좌 활용, 누가 어디에 얼마나 저축해야 하나요?

이대호(38세)·최경아(36세) 씨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10년도 훨씬 더 된 이대호 씨는 지난해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연봉도 7,000만 원을 넘어섰다. 최경아 씨는 공립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지 5년이 됐는데, 연간 급여는 4,500만 원 남짓 된다. 둘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고,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이대호·최경아 씨 부부가 한 해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을 제하고 나면 한 해 3,000만 원은 저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부의 재무 목표는 크게 3가지다. 자녀 교육 자금 마련, 주택 자금 마련, 노후 생활비 마련이 바로 그것이다.

여태껏 주택과 자녀 교육비 마련에 집중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매년 1,000만 원 정도를 떼서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해 볼 생각이다. 주변에서는 연금저축이나 IRP와 같은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노후 자금을 마련하면서 절세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상품에, 얼마만큼 투자해야 절세 효과를 가장 크게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대호·최경아 씨 부부와 같은 맞벌이 부부가 절세와 노후 준비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연금계좌가 있다. 다만 가입자의 나이와 소득 크기, 상품 종류에 따라 세액 공제 대상 금액과 공제율이 다르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누가, 어떤 상품에, 얼마만큼 투자할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먼저 각자의 세액 공제 한도를 살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간 700만 원이다. 이대호·최경아 씨는 30대이므로 각각 700만 원씩 최대 1,4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음은 저축 여력을 살필 차례다. 이대호·최경아 씨 부부의 저축 여력이 연간 1,400만 원을 넘는다면 각자 연금계좌에 700만 원 이상 저축하면 된다. 그런데 이대호·최경아 씨 부부는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매년 1,000만 원을 저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같이 저축 여력이 세액공제 한도보다 적은 경우에는 누구의 세액공제 한도부터 채울지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의 소득을 비교해 봐야 한다. 소득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종합소득 금액이 4,0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이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에서 공

제받을 수 있지만, 기준보다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13.2%만 공제받는다. 소득세법 제59조의3①

따라서 부부 중 세액공제율이 높은 사람의 세액공제 한도부터 채우는 것이 좋다. 이때 산출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세액공제란 어디까지나 산출 세액 범위 내에서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소득 자체가 적거나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서 산출 세액이 적거나 없으면 세액공제로 환급받을 세금도 없다.

그러면 이대호·최경아 씨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①안은 이대호 씨가 700만 원, 최경아 씨가 300만 원을 저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41만 9,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반대로 ②안은 최경아 씨가 700만 원을 저축하고, 이대호 씨가 300만 원을 저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종합소득세에서 최대 155만 1,000원을 환급받는다. ②안으로 저축했을 때의 환급금이 ①안보다 13만 2,000원이나 많다.

이대호·최경아 부부의 연금계좌 저축 금액과 환급 세액

구분	가입자	세액공제율	저축 금액	환급 세액	차이(①-②)
①안	이대호	13.2%	700만 원	92만 4,000원	13만 2,000원
	최경아	16.5%	300만 원	49만 5,000원	
	합계			1,000만 원	
②안	이대호	13.2%	300만 원	39만 6,000원	
	최경아	16.5%	700만 원	115만 5,000원	
	합계			1,000만 원	

마지막으로 투자 상품을 결정할 차례다. 연금저축과 IRP 중 어떤 상품에 가입해야 할까? 이때는 세액공제 한도를 살펴야 한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이다. 최경아 씨는 IRP만 이용해도 세액공제 한도를 전부 채울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에 가입해서는 세액공제 한도를 채울 수 없다. 연금저축에만 가입해서는 한 해 많아야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것도 종합소득이 1억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1억 2,000만 원) 이하일 때 그렇다는 것이고,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 원 줄어든다. 따라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IRP에 저축해야 한다.

이대호·최경아 씨 부부 사례로 돌아가보자. 앞서 세액공제 효과를 높이려면 최경아 씨가 700만 원, 이대호 씨가 300만 원을 저축해야 한다고 했다. 이때 이대호 씨는 300만 원을 연금저축이나 IRP 어느 쪽에 넣더라도 저축 금액을 전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최경아 씨는 다르다. 최경아 씨가 저축 금액 700만 원을 전부 세액공제 받으려면 최소 300만 원 이상을 IRP에 적립해야 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3325 전략'

'3325전략'이란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을 채우기 위한 저축 방법이다. 먼저 종합소득이 4,0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은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 원, IRP에 연간 300만 원을 저축하면 된다. 이를 월 저축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금저축에 33만 원, IRP에 25만 원씩 저축하면 된다고 해서 '3325 전략'이라고 한다. 하지만 종합소득이 1억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1억 2,000만 원)을 넘는 사람은 연금저축에만 가입해서는 한 해 많아야 300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7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나머지 400만 원은 IRP에 적립해야 한다. 이때는 거꾸로 매달 25만 원은 연금저축에, 33만 원은 IRP에 저축해야 연간 70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다.

5

공무원도 연금계좌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액공제

공무원인 김희선 씨(35세)는 연금저축이나 IRP 가입 여부를 두고 고민 중이다. 남들은 공무원연금만 해도 노후 생활비는 충분하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게 반 드시 그런 것만도 아니다. 몇 해 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재직하는 동안 보험료는 더 많이, 더 오랫동안 내면서, 연금 수령 시기는 늦춰지고 수령액도 줄어들었다. 김 씨의 생각에는 자신이 퇴직할 무렵이면 공무원연금만 가지고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한다.

개인연금을 추가로 준비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왕이면 노후 준비를 하면서 절세 혜택도 누리고 싶다. 그래서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려고 검토 중이다. 매년 연말정산 때만 되면 남들은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데 반해, 혼자 사는 김희선 씨는 별달리 받을 만한 공제가 없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다. 동료 말에 따르면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해 세액공제를 받으면 당장은 득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면 남는 것이 없다는 게 아닌가? 공무원연금에 개인 연금소득까지 더하면 세 부담이 더 커지지 않을까?

공무원은 연금을 많이 받으니까 노후 준비를 따로 할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무원이라고 해도 상황이 호락호락하진 않다. 수명 연장으로 노후 생활 기간은 늘어나는 데 반해, 연금 수령액은 줄이고 수급 연령을 늦추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희선 씨처럼 개인연금에 관심을 갖는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공무원·군인·교사도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 가능

기왕에 노후 대비 저축을 할 요량이면 절세 혜택이 있는 금융 상품을 고르는 것이 좋다. 저축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면서 연금도 받을 수 있는 금융 상품으로 연금저축과 IRP가 있다. 그런데 직장인이 아닌 공무원도 이들 금융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걸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을 ‘직역연금’이라고 한다. 2017년 7월 25일 이전만 하더라도 직역연금 가입자는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는 있어도 IRP에는 가입할 수 없었다. 그러다 2017년 7월 26일부터 IRP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연금저축에만 가입할 수 있을 때는 연말정산 때 많아야 400만 원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IRP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연금저축에 가입해 매년 400만 원을 저축하던 공무원이 IRP에 가입해 300만 원을 추가로 저축하면 연말정산 때 환급 받는 금액은 얼마나 늘어날까? 먼저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면 세액공제율은 16.5%이다. 따라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400만 원일 때 66만 원이던 최대 환급 세액이 700만 원이면 115만 5,000원으로 늘어난다. 총급여가 5,500만 원보다 많으면 세액공제율이 13.2%이다. 이때는 400만 원을 세액공제 받으면 최대 52만 8,000원을 돌려받지만, 700만 원을 공제 받으면 최대 92만 4,000원을 환급받는다.

세액공제 대상과 환급 금액

세액공제 대상	세액공제율	최대 환급 세액
400만 원	13.2%	52만 8,000원
	16.5%	66만 원
700만 원	13.2%	92만 4,000원
	16.5%	115만 5,000원

1,200만 원 이하 개인 연금소득은 분리과세 가능

이만하면 세액공제에 따른 절세 효과가 적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저축할 때 세제 혜택이 크다 해도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더 내야 한다면 굳이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정말 그럴까?

이 문제를 살펴려면 연금소득의 과세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서 받은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세액공제 받으며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연간 1,2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납세자가 낮은 세율(3.3~5.5%)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 저축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3.2%나 16.5%인 것과 비교하면 절세 효과가 상당한 셈이다. [소득세법 제14조](#)

그런데도 연금을 받을 때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우려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왜일까? 아무래도 과거 연금 관련 세제가 미친 영향이 큰 듯하다. 2012년 이전만 하더라도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한도가 연간 600만 원에 불과했다. 게다가 공

적연금소득과 연금저축에서 받은 연금소득을 합산해 분리과세 한도를 적용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가입자들은 공적연금 소득만으로도 분리과세 한도를 훌쩍 뛰어넘는다. 따라서 연금 저축에서 수령한 연금은 전부 종합과세 대상이 될 것이 뻔하므로 굳이 연금저축에 가입하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3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됐다. 우선 분리과세 한도도 6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배나 늘어났다. 게다가 공적연금소득은 빼고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수령한 연금만 연간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과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대상 및 기준 금액

	2012년 12월 31일 이전	2013년 1월 1일 이후
적용 대상	공적연금* + 사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 연금계좌(연금저축, IRP)	사적연금
한도	연간 600만 원	연간 1,200만 원

6

연금보험 비과세 혜택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대형 음식점을 운영 중인 최성환 사장(49세)은 지난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됐다. 이미 사업소득만으로도 최고 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던 터라, 2,000만 원 초과 금융소득도 꼼짝없이 최고 세율로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올해부터는 어떻게든 금융소득 종합과세만이라도 피해 보자는 생각으로 비과세 금융 상품을 찾았더니, 연금보험이 눈에 띄었다. 최성환 씨는 이미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있는데, 연금보험과 연금저축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연금보험에 가입할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도 궁금하다.

우리가 흔히 개인연금이라고 부르는 것은 세법상으로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세액공제 여부다. 먼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거나 자영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산출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연금을 ‘세제 적격 연금’이라고 하는데, 연금저축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연금저축은 금융회사에 따라 보험, 신탁, 펀드로 나뉘는데, 이 중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가장 많다. 연금저축이라고 하면 연금저축보험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개인연금 상품 중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것도 있는데, 이를 ‘세제 비적격 연금’이라고 부른다. 보험 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이 여기 해당한다.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저축성 보험에 주어지는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연금보험 가입자가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 살펴보자. 소득세법 제16조①

보험기간이 10년 이상 되어야 비과세

소득세법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장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여기서 보험차익이란 보험 계약에 따라 만기에 받는 보험금 또는 보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서 받는 환급금에서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빼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①](#)

본래 소득세법에서는 보험차익을 이자소득으로 보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서 제외한다. 먼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이나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저축성 보험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다. 여기서 만기일이나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을 넘더라도, 10년이 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에도 제약이 있다. 2017년 3월 31일 이전까지 체결한 보험 계약에는 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지만,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보험 계약부터는 1인당 1억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보험료 합계액이란 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 보험 계약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 저축성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한 경우에는 처음으로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게 만드는 보험부터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의 저축성 보험

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보험료가 1억 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약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상 된다면 1억 원까지 납입하는 보험 하나와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보험으로 나눠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1억 원이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에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최초 보험 가입일부터 만기일이나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한다. 또한 매달 납부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해야 하고, 기본보험료 선납기간이 6개월을 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를 1배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본보험료와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합쳐 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월별로 15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매달 150만 원 이상을 저축하려는 사람은 월 보험료가 150만 원인 것과 150만 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눠서 가입하는 것이 좋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②](#)

일정한 조건 갖추면 종신형 연금은 납입 한도 없이 비과세

종신형 연금보험은 아래 5가지 조건을 갖추면 납입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첫째,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보험금과 수익을 연금 형태로 지급받아야 한다. 연금 이외의 다른 형태로 보험금이나 수익을 지급받아서 안 된다.

둘째, 연금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같은 사람이어야 하고, 최초 연금 지급이 개시된 다음에 중도해지할 수 없어야 한다. 계약자는 보험료 계약의 주체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고, 수익자는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다.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종신형 연금에서는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이 지급된다.

셋째,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 계약과 연금 지급 재원이 소멸해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다음에도 보증기간이 남아 있으면 보증기간이 종료될 때 보험 계약과 연금 지급 재원이 소멸해야 한다. 종신형 연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오래 살면 그만큼

득이 되겠지만, 조기에 사망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종신형 연금에서 피보험자가 조기에 사망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간을 두고 있다.

넷째, 보증기간은 피보험자의 기대 여명 연수 이내에서 정해야 한다. 이는 종신형 연금을 상속이나 증여 수단으로 남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기대 여명 연수란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 여명 연수를 말한다.

다섯째,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연금액 한도는 연금 수령 개시일 당시 연금계좌 평가액을 연금 수령 개시일 당시 기대 여명 연수로 나눈 금액의 3배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④

장기 저축성 보험 차익 비과세 조건 및 한도

일시납 보험	월 적립식 보험	종신형 연금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기간 10년 이상 1인당 납입 한도 2017년 3월 이전 2억 원 2017년 4월 이후 1억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 보험료 월 150만 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55세 이후 연금 개시 사망할 때까지 연금 수령 보증 지급기간 ≤ 기대 여명 피보험자 사망 시 보험 계약, 연금 재원 소멸 연간 연금 수령 한도 연금 개시 당시 연금계좌 평가액 × 연금 개시 당시 기대 여명 연수^{×3}

7

대표이사나 임원은 퇴직금을 얼마나 받고,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퇴직연금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오기동 씨(52세)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자 세 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했다. 개인사업을 하면서 최고 세율로 소득세를 납부하기보다는, 법인으로 전환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기동 씨가 간과한 것이 있다. 개인과 법인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대표이사나 임원이라고 해도 법인 자금을 함부로 가져다 쓸 수는 없다. 법인 자금을 대표이사가 가져다 쓰면 법인세와 별도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던 차에 퇴직금을 잘만 이용하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개인사업자 중에는 오기동 씨처럼 세 부담을 덜려고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법인의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법인 자금을 맘대로 가져다 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 자금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다. 일한 대가로 정기적인 급여와 상여를 받을 수 있고,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급여와 퇴직급여, 배당을 수령할 때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할 때는 소득세와 법인세 간의 세율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법인에 축적된 자금을 찾아갈 때 납부하는 소득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급여와 배당보다는 세 부담이 적은 퇴직급여

그러면 급여와 배당, 퇴직급여 중 어느 쪽이 세 부담이 적을까? 급여와 상여는 근로소득이므로 종합과세 대상이다. 배당소득

도 많으면 종합과세가 될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한 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2,000만 원 초과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한다. 소득세를 과세할 때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최고 세율이 45%(지방소득세 별도)나 된다.

퇴직소득에도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세 부담이 훨씬 적다. 급여와 배당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하지만,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 하기 때문이다.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입사해서부터 퇴직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형성한 소득으로 근무기간이 늘어날수록 그 금액이 커진다. 그런데 퇴직급여를 퇴직하는 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하면 장기 근속자의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류과세한다.

분류과세한다고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는 건 아니다. 한 직장에서 장기간 일하면 퇴직급여가 커지고, 여기에 누진세율(6~45%, 지방소득세 별도)을 적용하면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연분연승(年年乘)’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연분’이란 퇴직금을 근무기간으로 나눈다는 뜻이다. 이렇게 퇴직소득을 근무기간으로 안분(按分)하면 금액이 적어져 누진세율을 적용하더라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런 다음 다시 근무기간을 곱해 납부할 세금을 구하는 것이 ‘연승’이다.

퇴직소득에는 각종 공제 혜택도 많이 주어진다. 근속연수에 비례해 퇴직급여 중 일부를 공제해 주는 ‘근속연수 공제’가 대표적이고, ‘환산급여공제’도 있다. 과거에는 퇴직급여의 40%를 일괄 공제해 줬지만,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이 있어 폐지하고, 퇴직급여 크기에 비례해 공제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환산급여공제’를 도입했다.

이처럼 분류과세, 연분연승 그리고 각종 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비해 세 부담이 가볍다고 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담을 30~40% 줄일 수 있다.

근무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원 퇴직소득 한도

급여와 배당보다는 퇴직급여에 대한 세 부담이 적다면 퇴직급여를 많이 받는 형태로 임금 제도를 바꾸면 될 것이다. 그런데

대표이사나 임원이라고 해서 별다른 제한 없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 이와 관련해서는 법인과 개인 입장에서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인 입장에서는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얼마만큼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해당 법인의 정관에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전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 규정이 없으면 임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해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10%에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은 최소 1개월 단위로 계산)를 곱해 나온 금액만큼만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⑥](#) [시행규칙 제22조⑤](#)

퇴직 임원의 입장에서 살펴보자. 퇴직급여로 받았다고 해서 전부 퇴직소득세 부과 대상은 아니다. 퇴직급여라고 해도 정해진 한도를 초과해 수령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퇴직소득 인정 기준은 시기에 따라 다르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수령한 퇴직급여는 별다른 한도 없이 전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직 지급 규정이 없는 법인은 규정을 만들고, 이미 만들어둔 규정이 있는 회사는 지급 한도를 높이기 위해 지급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자 과세 당국은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과는 별도로 임원 퇴직소득 인정 기준을 정해 2012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0년부터 그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근무기간에 따른 퇴직소득 인정 한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

[제22조③④⑥](#)

① 2011년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소득 인정 한도

해당 임원이 퇴직할 때 받은 퇴직소득을 근무기간에 따라 안분해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소득을 계산한다. 다만 2011년 12월 31일 당시 해당 법인에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었다면 2011년 12월 31일 퇴직을 가정할 때 지급 받았을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②](#)

- 2011년 12월 31일 당시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었던 경우

$$\text{퇴직소득 금액} \times \frac{\text{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text{전체 근무기간}}$$

- 2011년 12월 31일 당시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었던 경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했을 때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금액

②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소득 인정 한도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에는 연평균 급여의 10%에 근무기간을 곱해 나온 금액의 3배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2019년 12월 31일 포함, 직전 3년 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전부 더한 다음 3으로 나눠서 연평균 급여를 구한다. 이전 근무기간이 3년이 안 되면 근무기간 동안 수령한 급여를 연환산해서 연평균 급여를 구한다. 이렇게 계산한 연평균 급여의 10%에 근무기간(연수)을 곱해 나온 금액의 3배를 퇴직소득으로 인정한다.

$$\text{2019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times \frac{1}{10} \times \frac{\text{해당 근무기간(월)}}{12} \times 3$$

*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근무기간이 3년이 안 되면 해당 근무기간

③ 2020년 이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소득 인정 한도

2020년부터 임원 퇴직소득 인정 한도를 다시 축소했다. 이전에 3배수를 인정해 주던 것을 2배수만 인정해 주기로 한 것이다. 먼저 임원이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해 3년 동안 지급받은 급여를 전부 더한 다음 3으로 나눠 연평균 급여를 구한다. 이때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무기간이 3년이 안 되면 2020년 1월 1일 이후 수령한 급여만 가지고 연평균 계산한 연평균 급여의 10%에 근무기간(연수)을 곱해 나온 금액의 2배를 퇴직소득으로 인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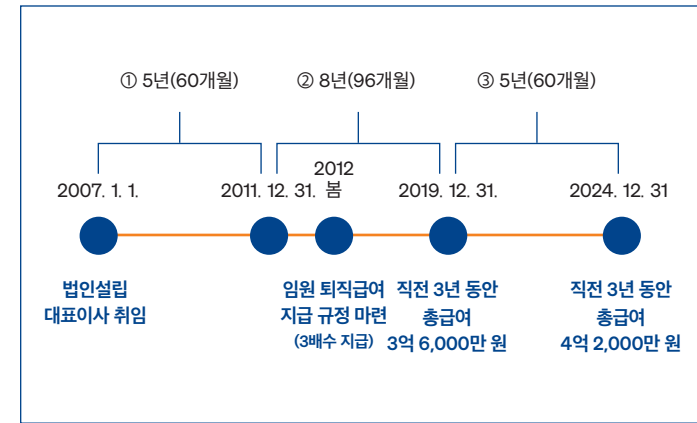
$$\text{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times \frac{1}{10} \times \frac{\text{해당 근무기간(월)}}{12} \times 2$$

* 2020년 1월 1일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기간이 3년이 안 되면 해당 근무기간

인정 한도 이내는 퇴직소득세, 초과 부분은 근로소득세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앞의 사례에서 오기동 씨는 2007년 1월 1일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2024년 12월 31일에 퇴직할 예정이다. 오기동 씨 회사에서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을 처음 도입한 때는 2012년 봄 무렵이다. 당시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아 지급 규정을 만들면서, 퇴직 임원의 연평균 급여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해 나온 금액의 3배를 퇴직급여로 지급하기로 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오기동 씨가 직전 3년간 수령한 급여는 3억 6,000만 원

이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 3년간 수령한 급여를 전부 합치면 4억 2,0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기동 씨가 2024년 퇴직할 때 퇴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이고, 퇴직급여 중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먼저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에 따라 오기동 씨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부터 계산해 보자.

오기동 씨가 2024년 12월 31일 이전 3년간 받은 급여가 4억 2,000만 원이므로, 연평균 급여는 1억 4,000만 원이다. 오기동 씨는 해당 회사에 18년간 근무했다. 따라서 1억 4,000만 원의 10%인 1,400만 원에 18을 곱하면 2억 5,200만 원이 된다. 오기

동 씨는 이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7억 5,600만 원을 퇴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7억 5,600만 원 중 얼마를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하려면 오기동 씨의 근무기간을 ① 2011년 12월 31일 이전 ② 2012년부터 2019년까지 ③ 2020년 이후로 나눠 살펴야 한다.

① 2011년 12월 31일 이전

먼저 2011년 12월 31일 당시 오기동 씨 회사에는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었다. 이때는 오기동 씨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근무기간에 따라 안분해 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한다. 오기동 씨의 2011년 이전 근무기간은 5년이고 전체 근무기간은 18년이다. 따라서 오기동 씨가 수령한 퇴직급여 7억 5,600만 원의 18분의 5에 해당하는 2억 1,000만 원은 퇴직소득으로 인정해 준다.

② 2012년부터 2019년까지

2019년 12월 31일 직전 3년 동안 오기동 씨가 받은 급여는 3억 6,000만 원이므로, 연평균 급여로 환산하면 1억 2,000만 원이

다. 이 금액의 10%에 근무기간 8년을 곱하면 9,600만 원이 나온다. 당시에는 이렇게 계산해 나온 금액의 3배인 2억 8,800만 원을 퇴직소득으로 인정해 줬다.

③ 2020년 이후

마지막으로 2020년 이후 퇴직소득 인정 한도를 계산해 보자. 오기동 씨가 2024년 12월 31일 퇴직할 당시 연평균 급여는 1억 4,000만 원이고, 2020년 이후 근무기간은 5년이다. 1억 4,000만 원의 10%에 근무기간 5년을 곱하면 7,000만 원이 되는데, 이 금액의 2배인 1억 4,000만 원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전체 근무기간을 통틀어 오기동 씨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6억 3,800만 원(=①2억 1,000만 원+②2억 8,800만 원+③1억 4,000만 원)이다. 여기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소득 인정 한도를 초과해서 수령하는 1억 1,800만 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오기동 씨의 퇴직급여 수령액과 퇴직소득 인정 금액

퇴직급여 수령액	7억 5,600만 원	= 1억 4,000만 원 × 10% × 18년 × 3배수
퇴직소득 인정액	6억 3,800만 원	= ① + ② + ③
① 2011.12.31. 이전	2억 1,000만 원	= 7억 5,600만 원 × 5년 ÷ 18년
② 2012.1.1.~ 2019.12.31.	2억 8,800만 원	= 1억 2,000만 원 × 10% × 8년 × 3배수
③ 2020.1.1. 이후	1억 4,000만 원	= 1억 4,000만 원 × 10% × 5년 × 2배수
근로소득 인정액	1억 1,800만 원	= 7억 5,600만 원 - 6억 3,800만 원

8

성과급을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세 부담이 확 줄어든다는데 맞나요?

퇴직연금

최기문 씨(50세)가 근무하는 회사는 매년 종업원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최 씨도 고액의 경영성과급을 꾸준히 받았다. 그런데 올해 부터 회사에서 경영성과급 중 일부를 떼어 퇴직할 때 퇴직급여로 주겠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들이 경영성과급을 받을 때 납부하는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인사 담당자가 설명했다. 절세를 할 수 있다는 말에 최 씨도 솔깃했다. 사실 경영성과급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는 즐거운 일이지만, 세금 부담 또한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경영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 회사의 경영 실적이 좋으면 종업원의 소득도 늘어나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세금이다. 본래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의 일종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한다. 알다시피 종합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받던 급여에 경영성과급까지 더하면 세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똑같은 경영성과급을 받더라도 고액 연봉을 받는 근로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자.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급여만 가지고 산출한 과세표준이 4,600만 원 남짓 되는 근로자 A와 8,800만 원 남짓 되는 근로자 B가 있다고 치자. 이들이 경영성과급으로 3,000만 원을 수령했다고 가정해 보자. 먼저 A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24%(지방소득세 별도)이다. 따라서 A는 경영성과급 3,000만 원을 수령할 때 소득세 720만 원과 지방소득세 72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B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35%(지방소득세 별도)이다. 따라서 B는 경영성과급 3,000만 원을 받을 때 1,155만 원(소득세 1,050만 원, 지방소득세 105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과세표준과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

* 지방소득세 별도

경영성과급, DC형에 적립하면 세금 확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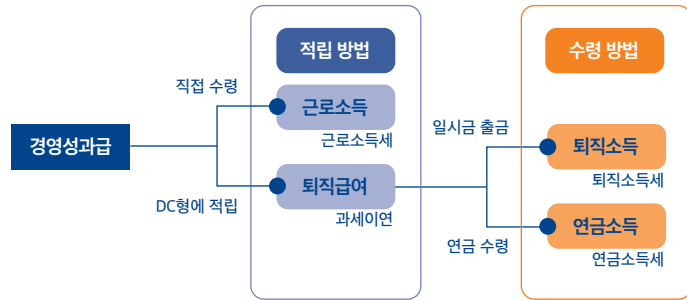
그렇다면 경영성과급에 따르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회사가 경영성과급을 근로자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근로자의 DC형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 주면 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당장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

라, 나중에 퇴직하면서 적립금을 인출할 때도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②](#)

이는 퇴직소득세 과세 체계가 다른 소득과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한다. 그리고 세금을 산출할 때 연분연승 방법을 적용하고 각종 공제 혜택까지 주고 있다.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한 돈은 퇴직하면서 연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이때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데, 퇴직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30~40%나 줄어든다.

이처럼 실제 차원에서 보면 근로소득세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적은 사람은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했다가 나중에 퇴직급여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 절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근로소득에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부과되지만, 퇴직급여로 수령하면 이 같은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노후 소득 확보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 경영성과급을 퇴직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해 노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

경영성과급 적립 및 수령과 과세



경영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경영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퇴직급여 제도 가입 대상이 되는 근로자 전원을 적립 대상으로 해야 한다. 경영성과급을 퇴직급여로 적립하지 않고 즉시 수령하고 싶은 근로자는 최초로 제도를 시행한 날이나 규칙을 변경한 날에 적립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면 된다. 둘째,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그리고 적립 방식이 퇴직연금 규약이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만 경영

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이나,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만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은 먼저 DC형 퇴직연금부터 도입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임금 상승률이 높은 회사는 혼합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임금 상승률이 높은 회사의 근로자는 DC형보다 DB형을 선호한다. 이는 DB형과 DC형의 퇴직금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DC형은 매년 발생한 퇴직급여를 근로자의 퇴직 계좌로 이체한 다음 근로자가 이를 운용한다. 따라서 같은 날 입사해서 같은 급여를 받고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매년 DC형 계좌로 이체된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어떻게 운용했느냐에 따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이 달라진다.

하지만 DB형 퇴직연금에서는 회사가 퇴직급여 적립금을 운용하고 성과에 책임을 진다. 근로자는 퇴직할 때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미리 정해진 계산 방식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하게 된다. 퇴직 이전 30일분 평균임금에 계속 근로기간을 곱해 퇴직금을 산출한다. 계산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듯, 퇴직하기 직전에 임금이 많아야 퇴직금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임금 상승률이 높다면 DC형보다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임금 상승률이 높은 회사에서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임금 상승률만 놓고 보면 DB형 제도가 유

리하지만, 경영성과급은 DC형 퇴직연금계좌에만 적용할 수 있다. 이때는 회사가 혼합형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면 된다. 혼합형이란 근로자가 DB형과 DC형 퇴직연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매년 발생하는 퇴직급여를 DB형과 DC형에 나눠서 적립한다.

혼합형 제도에서 DB형과 DC형의 혼합 비율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비율로 설정해야 한다. 즉 한 회사에서 혼합형 비율은 하나의 비율만 존재한다.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적립 비율을 선택할 수 없다. 회사는 향후 혼합 비율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DC형 적립 비율을 증대하는 방향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임금 상승률이 높은 회사는 혼합형 제도를 설정하면서 DB형 적립 비율을 높게 설정하면 DB형이 갖는 장점은 살리면서 경영성과급은 DC형 퇴직연금계좌에 적용할 수 있다.

2 연금 운용·중도인출과 세금

- 9 국민연금 |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나요?
- 10 연금계좌 | 운용 중에 이자·배당을 받아도 세금을 안 낸다는데 맞나요?
- 11 연금계좌 | 해외 ETF에 투자하면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 12 퇴직연금 |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중도인출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 13 연금보험 | 중도해지하거나 중도인출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9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내나요?

국민연금

한승주 씨(33세)는 다음 달에 프랑스 파리로 이민을 갈 계획이다. 일단 한국을 떠나고 나면 당분간 귀국할 계획이 없다. 살고 있던 집도 처분하고 예금과 펀드 등 금융 상품도 어느 정도 정리를 마쳤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면서 8년 가까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이민을 떠나면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는 찾을 수 있는지, 만약 적립금을 찾을 수 있다면 별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60세 이후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60세가 됐는데도 보험료 납부기간이 채 10년이 되지 않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한승주 씨처럼 60세가 되기 전에 해외로 이민을 떠나거나, 사망하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는 걸까? 돌려받는다면 이때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 납부

국민연금 가입자가 60세가 됐는데도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게 된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한다. 한승주 씨처럼 가입자가 국외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해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 밖에 국민연금 가입자나 과거에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급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유족에게 반환일

시금이 지급된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중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받게 된다. 이때 이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을 적용한다.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다. 다만 2018년 1월 25일 이후 지급 연령 도달에 따른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된다. 반환일시금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면 된다.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

-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단, 특례 노령연금 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예) 사망 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 할 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그렇다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 근로자와 직장에서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와 마찬가지로 반환일시금도 퇴직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해서 받는 반환일시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2조](#)

① 제12조

과세 대상 소득은 어떻게 산출할까? 국민연금 가입자는 2002년 1월 1일(과세 기준일)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반환일시금 중에서 과세 기준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와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 대상이다. 과세 대상 소득은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①](#)

- ① 2002년 1월분 이후 국민연금 납부 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 누계액과 이자
- ②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 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 부담 금액을 뺀 금액

사망일시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때는 기본 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때는 50%, 20년 이상일 때는 60%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유족연금에

부양가족연금을 더해 수령하게 된다. 노령연금과 달리 유족연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일종의 장제보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다.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 중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은 연도별 재평가율에 따라 사망일시금 수급 전년도 현제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유족연금과 마찬가지로 사망일시금도 비과세 대상이다. [소득세법 제12조](#)

사망일시금 수급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자가 없는 경우 다음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장제부조적·보상적 성격으로 사망일시금 지급

- ① 배우자
- ② 자녀
- ③ 부모
- ④ 손자녀
- ⑤ 조부모
- ⑥ 형제자매
- ⑦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 방계혈족

10

운용 중에 이자·배당을 받아도 세금을 안 낸다는데 맞나요?

세금문답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금융 상품에서 얻은 쥐꼬리만 한 이자나 배당 수입에도 꼬박꼬박 세금이 부과된다. 이 같은 세 부담을 줄이면서 노후 자금을 마련할 방법은 없을까? 손승자 씨(45세)는 뭔가 수를 내야지 싶어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하기로 했다. 이들 금융 상품에 가입하면 저축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자나 배당이 발생해도 이를 찾아 쓰기 전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해외펀드에 투자할 때 연금저축이나 IRP를 활용하면 세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

연금저축과 IRP라는 말을 들었을 때 떠오르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세액공제라는 대답이 가장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들 연금계좌에 저축하면 저축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세금을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세제 혜택에 세액공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인출 시점까지 미루고, 적립금과 운용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것 또한 투자자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세제 혜택이라 할 수 있다.

운용 수익은 찾아 쓸 때 과세한다

금융 상품에 투자할 때 무시하지 못할 게 세금이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금융 상품에 투자해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같은 금융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먼저 금융회사에서 이자와 배당을 지급할 때 15.4%의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그리고 한 해 동안(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하고 있다.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다른 소득이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연금저축과 IRP와 같은 연금계좌 적립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이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에는 당장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이를 인출할 때 과세한다. 이를 두고 과세 시기를 뒤로 미룬다고 해서 ‘과세이연’이라고 한다. 당장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인출 전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도 없다. [소득세법 제20조의3③](#)

연금으로 수령하면 저율로 과세한다

그렇다고 세금을 전혀 안 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운용 수익을 찾아 쓸 때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 대상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비교적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소득세율은 연금을 받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 연금저축과 IRP 가입자는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 연금 수령자 나이가 70세 미만이면 5.5%, 70세부터 79세 사이면 4.4%, 80세 이

상이면 3.3%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연금소득세율은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 가입자가 살아 있는 동안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형을 선택하면 연금 수령자 나이가 70세가 안 된 경우에도 4.4%의 세금이 부과되다 이후 80세가 되면 3.3%로 변경된다. 소득세법 제129조①

운용수익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

연금 수령 시기(연금 수령일 현재)	연금소득세율	종신연금 수령 시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4.4%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3.3%

과세 대상 운용 수익을 55세 이전에 인출하거나 연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찾아 쓸 경우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소득세법 제21조①

기타소득세율은 16.5%로 일반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15.4%)보다 높다. 하지만 해당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한 해에 2,000만 원이 넘는 운용 수익을 일시에 찾아 쓰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

는다. 소득세법 제14조③

해외 투자에 따른 종합과세 우려, 연금계좌로 피하자

2016년 4월 1일부터 펀드 과세 방법이 일부 바뀌었다. 이전에는 펀드를 매년 1번씩 결산하면서, 이때 펀드가 투자하는 주식에서 발생한 매매·평가 차익과 환차익을 이자·배당과 같은 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펀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같은 과세 방식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매년 결산을 하면서 세금을 부과하면 주가가 오르거나 환차익이 발생한 해에 세금을 내면서도 주가가 떨어지거나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주식형 펀드 투자자의 불만이 컸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주식의 매매·평가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결산 후 과세를 하더라도 별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 주식형 펀드는 주식의 매매·평가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홍길동 씨가 해외 주식형 펀드에 2년간 자금을 운용하면서 첫해에는 주식 매매로 200만 원 이득을 얻었고, 두 번째 해에는 300만 원 손실을 봤다고 치자. 그리고 투자기간 동안 주식 매매 이외에 다른 이익이나 손실은 없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홍길동 씨는 첫해 주식 매매 차익 200만 원에 대해 배당소득세 30만 8,000원(=200만 원×15.4%)을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해에는 손실을 봤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다고 지난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다. 이렇게 되면 홍길동 씨 입장에서는 2년간 투자하면서 100만 원 손해를 보고도 30만 원이 넘는 세금을 납부한 셈이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4월부터 펀드 과세 방법을 일부 변경했다. 매년 펀드를 결산하면서 발생한 주식과 채권 매매 이익과 환차익에 바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투자자가 펀드를 환매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자기간 동안 손익을 통산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로써 장기 펀드 투자자들이 가졌던 불만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과세 방법 변경으로 투자자가 주의해야 할 일이 또 하나 생겼다.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다. 장기간 해외펀드에 투

자하는 동안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이때 펀드를 환매하면 해당 연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해외펀드를 투자할 때 절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해외펀드 투자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요량이라면 연금계좌(연금저축, IRP)도 고려해 볼 만하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은 이를 인출하기 전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따라서 운용기간 동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운용 수익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비교적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운용 수익을 일시에 찾아 쓰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지만, 이 또한 분리과세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아니다.

해외펀드에 투자할 때 과세 방법

해외펀드 수익	일반 해외펀드	연금계좌
주식배당	과세	과세이연
이자소득	과세	
주식 매매 이익	과세 유보	
채권 매매 이익	과세 유보	
외환 차익	과세 유보	

* 과세 대상 수익은 15.4% 세율로 원천징수

* 과세 유보 수익은 환매 시점에서 수익과 손실을 상계하여 과세

11

해외 ETF에 투자하면
어떤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연계문단

나모수 씨(38세)는 해외 투자에 관심이 많다. 해외 주식에 직접 골라 사고팔아 봤지만 변동성도 크고, 종목을 발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은 주로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고 있다. 특히 나스닥과 S&P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많이 투자했는데, 최근 미국 증시가 급등하면서 큰 수익을 얻었다. 그런데 수익이 많이 나서 좋기는 하지만 세금을 내려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내 상장된 해외 ETF에서 발생한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고, 배당소득이 많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될 수도 있다. 세금을 아끼면서 해외 ETF에 투자하는 방법은 없을까? 연금계좌를 활용해 해외ETF에 투자하면 세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얼마만큼 있는지 궁금하다.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직장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연말정산이나 세액공제라는 대답을 많이 듣는다. 노후 준비라고 답하는 사람도 있다. 대다수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으며 노후 준비를 할 요량으로 이들 연금 상품을 찾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해외 투자 열풍과 함께 해외 ETF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종전과는 다른 이유로 연금저축과 IRP를 찾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연금계좌를 활용하면 해외 ETF 투자에서 발생한 세금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하면 세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 주식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가 크게 늘어났다. 애플이나 아마존 같은 주식을 직접 사고파는 투자자도 있고, 해외펀드를 이용해 간접투자 하기도 한다. 요즘은 S&P500, 나스닥100,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와 같은 해외 주가지수를 추적하는 ETF(상장지수펀드)를 찾는 투자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ETF는 특정 주가지수를 추적하는 인덱스 펀드를 주식시장에 상장시켜 둔 것이다. 해외 주식에 직접투자 할 때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정보 획득 문제다. 다양한 해외 주식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투자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고, 할 수 있다고 해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해외펀드를 이용하면 이 같은 수고는 덜 수 있지만, 실시간 거래가 어려운 단점이 있다.

해외 주가지수 ETF를 활용하면 적은 금액으로 다양한 해외 주식에 분산 투자 할 수 있고,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 주식처럼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 주가지수 ETF에 비해 세 부담이 큰 것은 단점이다.

먼저 해외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투자회사형)의 과세 방법부터 살펴보자. ETF투자에서 얻는 수익은 크게 매매 차익과 분배금으로 나뉜다. 분배금은 주식의 배당금 또는 채권의 이자와 유사하다. ETF가 보유한 주식과 채권에서 발생한 배당과 이자 등을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것을 분배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분배금과 달리 매매 차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양도소득은 과세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한다. 따라서 매매 차익이 아무리 커

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될 우려는 없다. 둘째, 과세기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에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과세한다. 과세기간 동안 ETF를 여러 번 사고 팔다 보면 이익이 나기도 하고 손실을 볼 때도 있는데, 이때 손익을 상계한 다음 과세하면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셋째, 과세 대상 소득에서 250만 원을 기본공제하고 나서 과세한다. 양도소득세율은 22%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자. 나모수 씨가 지난해 해외 ETF 2개를 매도해서 1,000만 원 이익과 250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해보자. 먼저 이익 1,000만 원에서 손실 250만 원을 상계하면 750만 원이 남는다. 여기서 다시 250만 원을 기본공제하면 500만 원이 남는다. 여기 세율 22%를 곱하면 납부할 세금은 110만 원이다.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하면 세금은?

해외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면서 국내 거래소에도 해외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속속 상장되고 있다. 해

외 상장 ETF와 달리 국내시장에 상장된 ETF(신탁형)를 매도해서 얻은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분배금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금융회사는 15.4% 세율로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그리고 한 해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는데 2,000만 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누진과세될 수 있다.

일반 위탁 계좌에서 거래를 하면 매매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지 않고 과세한다. 나모수 씨가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 2개를 매도해서 1,000만 원의 이익과 250만 원 손실을 봤다고 해 보자. 이때 250만 원 손해 본 것은 내버려두고, 1,000만 원 이익 본 것에만 배당소득세(15.4%)를 부과한다. 이렇게 손익을 통산해 주지 않으면 배당소득이 커지고 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당연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

해외 ETF에 대한 과세

구분	매매 차익	분배금	비고
해외 상장 (투자회사형)	양도소득	배당소득	양도소득세율 22% (기본공제 250만 원)
국내 상장 (신탁형)	배당소득 (보유기간 과세)	배당소득	배당소득세율 15.4%

연금계좌에서 해외 ETF에 투자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그렇다면 보다 세금을 절감하면서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하는 방법은 없을까? 애당초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연금계좌에서는 예금부터 펀드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데,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 주가지수 ETF에도 투자할 수 있다. 흔히 연금계좌라고 하면 세액공제만 떠올리는 사람이 많은데, 세제 혜택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 일반 위탁 계좌에서 매매 차익

과 분배금이 발생하면 즉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매매 차익과 분배금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출하기 전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수익을 고스란히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배가된다.

운용기간 중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주는 것도 장점이다. 일반 위탁 계좌에서 ETF에 투자했을 경우 다른 상품과 손익을 통산하지 않고 수익이 실현되는 즉시 과세된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고 남은 금액에 과세하기 때문에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연금계좌 적립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이때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한 연금소득에는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만 넘지 않으면 이것으로 과세를 종결 지을 수 있다.

다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연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기타소득세율은 16.5%로 배당소득세율(15.4%)보다 높다. 하지만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연금계좌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과세이연, 손익 통산, 저율 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등 다양한 절세 혜택을 누리며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할 수 있다.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ETF는?

연금계좌라고 해서 모두 ETF 투자가 가능하지는 않다. 연금에서 ETF를 매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찾아야 한다. 주로 대형 증권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최근 일부 은행에서도 퇴직연금(DC형, IRP)을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실시간 매매 서비스는 증권사에서만 제공 중이다.

연금계좌에서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만 투자할 수 있다. 다만 레버리지ETF와 인버스ETF는 투자할 수 없다. 이 밖에 퇴직연금 적립금은 파생 상품 편입 비중이 높은 원자재ETF 등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퇴직연금에서는 적립금 중 70% 이상을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주식 편입 비중이 40%가 넘는 펀드와 ETF가 여기 해당한다. 반면 연금저축은 이 같은 투자 한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보다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12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 중도인출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퇴직연금

송준기 씨(39세)의 최대 고민은 '내 집 마련'이다. 최근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데다, 때마침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한 터라 마음이 급하다. 문제는 돈이다.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정리하고 대출도 받을 생각이지만 여전히 집값을 대기에는 부족하다. 송준기 씨가 다니는 회사는 아직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 중간정산이 가능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

살다 보면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만 해도 그렇다. 노후를 위해 이것만은 남겨둬야지 하고 다짐을 하지만, 당장 급한 일이 생기면 손을 댈 수밖에 없다. 송준기 씨처럼 결혼 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하느라 목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본인이나 가족이 아프거나 다쳐서 의료비가 필요할 때도 있다. 하지만 연금 상품을 중도에 해지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왜냐하면 적립할 때 세제 혜택이 큰 만큼 중도에 자금을 인출할 때에도 그만큼 제약과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재직 중에 퇴직급여를 찾아 쓸 수 있나?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노후 생활비 재원이므로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에 찾아 쓸 수 없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퇴직급여를 찾아 쓸 수 있는지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퇴직급여 제도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퇴직급여의 종류에 따라 중간정산 가능 여부와 조건이 차이가 난다.

먼저 퇴직금 제도에서는 2012년 7월 이후부터 중간정산 요

건이 강화됨에 따라 회사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개별 근로자는 법정 사유에 해당되면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②](#)

그러면 언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을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다. 먼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야 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때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다만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한 중간정산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한 번만 가능하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이 밖에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것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하는 경우, 근로자가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이번에는 퇴직연금을 살펴보자.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그러면 퇴직연금 가입자는 다급한 사정이 있어도 퇴직급여를 찾아 쓸 수 없는 걸까? 그렇지 않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도인출을 할 수 없지만,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자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퇴직급여를 중도인출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제23조의13

법정 사유는 퇴직금 중간정산 때와 대동소이하다.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요양, 파산, 개인 회생, 재난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가입자는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실시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는 없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 제2조①

DC형과 달리 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없다. 일부 회사에서는 DB형과 DC형 퇴직연금 제도를 함께 도입하고,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DB형 가입자가 DC형으로 갈아타면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퇴직급여 중간정산과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

중간정산 또는 중도인출 사유	퇴직금	DC형·IRP·중기 퇴직연금	DB형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	중간정산 중도인출 불가능 (DC형 전환하면 중도인출 가능)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 1회 한정)	○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	○	
신청한 날부터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	
신청한 날부터 5년 이내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	
사용자가 정년 연장·보장 조건으로 임금 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	×	
사용자가 소정 근로시간은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할 때도 세금을 내나?

송준기 씨의 사례로 돌아가보자. 송준기 씨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을까? 그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무주택자이므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이렇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해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②](#)

이번에는 연금저축이나 IRP와 같은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중도인출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절감할 수 있다.

하지만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이때는 퇴직급여 원금에 대해서는 본래대로 퇴직소득세가 과세되고, 늘어난 운용 수익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면 퇴직급여

원금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운용 수익은 연금소득으로 본다. 이때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4조③](#)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는 천재지변,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 이주, 연금 계좌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금계좌 가입자가 파산선고나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등이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 인출하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①](#)

중도해지하거나 중도인출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이미숙 씨(50세)는 7년 전 연금보험에 가입했다. 비과세 혜택도 누리며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처음 계획한 대로 60세가 될 때까지 꾸준히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기만 하면 든든한 노후 생활비 재원이 될 것 같다.

그런데 최근 사업 자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연금보험 적립금 중 일부를 꺼내 쓸 생각이다. 문제는 세금이다. 처음 연금 보험에 가입할 때 10년은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7년 만에 중도인출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다. 만약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도 궁금하다.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 보험 상품의 매력 중 하나로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들 수 있다. 다만 저축성 보험 가입자가 비과세 혜택을 누리려면 보험 가입일로부터 10년 이상 보험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면 이미속 씨처럼 연금보험을 가입한 지 채 10년이 지나기 전에 적립금 중 일부를 중도에 인출하면 어떻게 될까? 이 때도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조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①③④⑥

구분	비과세 조건
월 적립식이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 일 것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다음 기준 이하일 것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한 보험 계약의 경우: 2억 원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한 보험 계약의 경우: 1억 원
월 적립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 일 것 최초 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 적립식 보험 계약일 것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기본보험료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 기본보험료 증액하는 경우 포함) 계약자 1명당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이 150만 원 이내일 것 (2017년 4월 1일 이후 체결한 보험 계약에 한함)

중신형 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입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 지급 연금 외 형태로 보험금과 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것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할 것 최초 연금 지급 개시 후 사망일 이전에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사망 시(보충 지급기간이 설정된 경우 해당 기간 종료 시) 연금 재원이 소멸할 것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것 $\frac{\text{연금 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text{연금 수령 개시일 현재 기대 여명 연수}} \times 3$
--------	--

연금보험 적립금 중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최근 판매되는 연금보험은 계약자가 원하면 연금을 수령하기 이전이라도 적립금 중 일부를 꺼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적립금 중 일부를 중도인출할 때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 처음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다음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받는 데 별문제가 없다. 하지만 보험 계약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시점에서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몇 가지 따져봐야 할 것이 있다.

중도인출을 신청하면 보험 회사는 먼저 보험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원금부터 내어주는데, 원금을 인출하는 동안에는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납입 원금을 전부 빼 쓰고 나면 보험차익을 내주는데, 이때 이자소득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대다수 연금보험 계약이 납입한 보험료 이내에서만 중도인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이 같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보험의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는 상황이 복잡해진다. 당시만 해도 최초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 또는 최초 원금 인출일까지 기간이 10년이 안 되면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를 부과했다.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중도인출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으면 실령 보험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했더라도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행히 2005년 1월 1일부터 관련 법률에서 ‘최초 원금 인출일까지’라는 부분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2005년 이후에 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보험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10년 이내 중도인출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득세법 16조](#)

연금보험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그렇다면 연금보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이때는 보험 계약 유지 기간부터 살펴야 한다. 먼저 처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보험 계약을 해지한 날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보험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계약 유지 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에서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먼저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소득세법 제16조](#)

3

연금 수령과 세금

- 14 국민연금 | 노령연금을 받을 때는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 15 퇴직연금 |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 16 퇴직연금 | 중간정산한 사람은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다고 하던데 맞나요?
- 17 퇴직연금 | 퇴직급여 수령과 세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18 연금계좌 |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얼마나 내나요?
- 19 연금계좌 | 한 해에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20 연금계좌 | 연금을 받을 때 적립금은 어떤 순서로 인출되나요?
- 21 연금보험 | 즉시연금 가입자도 연금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22 연금계좌 | (구)개인연금저축 가입자도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내나요?

14

노령연금을 받을 때는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문의하는

이성복 씨(63세)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난달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연금 수령액이 생각보다 적어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했더니,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 혹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직장 다닐 때처럼 연말정산도 해야 하는 걸까?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 그렇다.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 생활비 보장이라는 국민연금 본연의 취지에 비춰보면 노령연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다소 의아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까지만 해도 노령연금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대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소득 시기와 납세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려고 도입한 것이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제도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기 시작한 것은 2001년부터다. 2001년 한 해 동안은 종합소득이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중 5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2002년 1월 이후부터는 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해주고 있다. 연금을 수령할 때는 당해 연도 수령한 연금에서 2002년 1월 1일(과세 기준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수령한 연금소득에만 과세한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어차피 조삼모사(朝三暮四)가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납세 시기를 뒤로 늦추는 이득을 누리면서 세금 부담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소득세를 과세할 때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이 많으면 세 부담도 커진다는 얘기다. 따라서 소득이 많은 근로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를 공제받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은퇴 생활 기간에 연금을 수령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게 이득이 될 수도 있다.

노령연금의 과세 대상 연금액 산출 방법

	2000년 이전 분	2001년 분	2002년 이후 분
보험료 납부 시	소득공제 불인정	납입금 50% 소득공제	납입금 전액 소득공제
연금 수령 시	비과세		과세

과세 대상 소득은 어떻게 산출하나?

노령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낼까?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려면 먼저 과세기준금액부터 산출해야 한다. 노령연금 중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소득공제를 받은 보험료에서 발생한 것에 한한다. 과세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다.

과세기준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연금에 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에서 과세 기준일(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환산소득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매년 기준소득월액을 연금 수급 개시 전년도(2010년)의 현재 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①](#)

$$\text{과세기준금액} = \text{과세기간 노령연금 수령액} \times \frac{\text{2002년 이후 납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 누계액}}{\text{총 납입기간 동안의 환산소득 누계액}}$$

예를 들어 A씨가 2020년 한 해 동안 노령연금으로 1,2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A씨는 1991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고, 2011년부터 1월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동안 A씨의 기준소득월액을 연금 개시 전년도(2010년)의 가치로 환산해 합산하면 1억 원이고, 이 중 2002년 이후 것만 더하면 5,000만 원이다. 이 경우 A씨는 2020년에 받은 노령연금 1,200만 원 중 600만 원이 과세기준금액이 된다.

$$\text{A씨의 과세기간 연금액} = 1,200\text{만 원} \times \frac{5,000\text{만 원}}{1\text{억 원}} = 600\text{만 원}$$

과세 기준일(2002년 1월 1일) 이후에도 연금보험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납부한 보험료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과세제외 기여금’이라고 한다. 전업주부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을 빼고 남은 것이 과세 대상 연금액이다. 만약 과세제외기여금이 해당 연도의 과세기준금액보다 많으면 다음 연도 과세기준금액에서 빼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③](#)

연금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세금을 내나?

과세 대상 연금액을 산출했으면 여기서 각종 공제 금액을 뺀 다음 과세표준을 산출할 차례다. 대표적인 공제 혜택으로 연금소득공제가 있다. 과세기준금액이 350만 원 이하이면 전액을 공제해 주고, 350만 원 초과 700만 원까지는 40%,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까지는 20%, 1,400만 원 초과 금액은 10%를 공

제해 준다. 이 같은 방법으로 과세기준금액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해 준다.

연금소득공제

과세 대상 연금액	연금소득공제액(한도 900만 원)
350만 원 이하	총 연금액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총 연금액 - 350만 원) × 40%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490만 원 + (총 연금액 - 700만 원) × 20%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 + (총 연금액 - 1,400만 원) × 10%

연금소득공제 이외에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도 받을 수 있다. 과세 대상 연금소득에서 각종 공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그리고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고, 표준세액공제(7만 원)까지 차감하면 노령연금에 대한 세금이 계산된다. 이렇게 각종 공제 혜택이 많다 보니 노령연금 자체만으로는 세 부담이 그리 크지 않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 앞서 이성복 씨가 다른 부양가족 없이 혼자서 살고, 노령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노령연금 수령액 중 과

세 대상 연금액이 770만 원이라고 해보자. 이 경우 과세 대상 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504만 원)와 본인공제(150만 원)를 제하고 나면 과세표준은 116만 원이 된다. 여기에 세율(6%)을 곱해 세금을 산출하면 6만 9,600원이다. 그런데 표준세액공제(7만 원)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성복 씨가 납부할 세금은 없다. 혼자 살면서 노령연금 이외 다른 소득이 없으면 과세 대상 연금액이 770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세금을 내게 된다. 아래 표는 이성복 씨의 과세 대상 연금액이 변화함에 따라 소득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나타낸 것이다.

과세 대상 연금액 규모에 따른 소득세

과세 대상 연금액	77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 연금소득공제	504만 원	550만 원	640만 원	690만 원
(-) 본인공제	1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 과세표준	116만 원	300만 원	710만 원	1,160만 원
× 소득세율(지방소득세 별도)				
= 산출 세액	6.96만 원	18만 원	42.6만 원	69.6만 원
(-) 표준세액공제	7만 원	7만 원	7만 원	7만 원
= 납부 세액	0원	0원	35.6만 원	62.6만 원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연말정산도 해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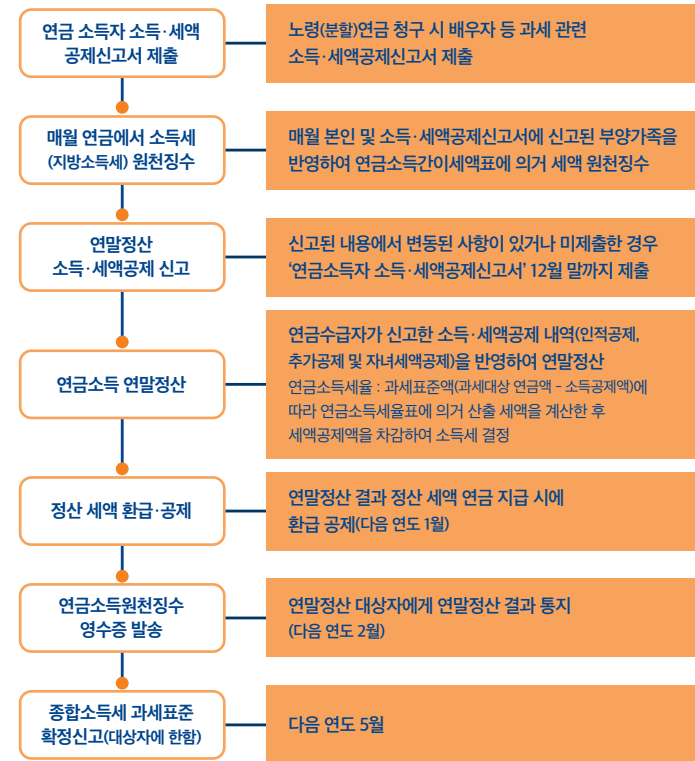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은 어떻게 낼까? 국민연금공단이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납세 절차는 생각보다 번거롭지 않다. 직장 다닐 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먼저 연금소득자는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배우자와 부양가족 등 과세 정보를 담고 있는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신고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이를 매달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그리고 연금소득자는 신고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까지 해당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기초로 세금을 다시 산출한 다음 원천징수한 세금과 비교해 정산한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다음 해 1월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더해서 지급한다. 반대로 추가로 징수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도 1월분 노령연금에서 차감한다. 노령연금 이외

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 납세 절차는 이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노령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듬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공적연금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 350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된다.

노령연금 과세 절차



노령연금 수급자가 부양가족이 될 수 있을까?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이 가장 큰 것이 인적공제 항목이다. 인적공제 항목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다. 기본공제 항목으로는 본인공제(150만 원), 배우자공제(150만 원), 부양가족공제(150만 원)가 있고, 추가공제로는 경로 우대(100만 원), 장애인(200만 원), 부녀자(50만 원), 한부모가족(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노령연금 수급자가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 할 때 배우자공제나 부양가족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소득세법은 배우자공제나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연간 소득 금액은 각종 공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다. 따라서 공적연금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은 없다고 할 때, 과세 대상 연금액이 516만 원보다 적으면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 할 때 배우자공제나 부양가족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다. 과세 대상 연금액이 516만 원이면 연금소득공제로 416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금소득공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 100만 원이 연금소득 금액이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공제 구분	공제 대상 요건	공제 금액
기본 공제	본인공제	수급권자 본인 150만 원
	배우자공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150만 원
	부양가족공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위탁아동 150만 원
추가 공제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자로 만70세 이상 100만 원
	장애인	• 장애인(연령 제한 없음) 200만 원
	부녀자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한부모가족공제에도 해당하는 경우 부녀자공제 중복 적용 배제 • 종합소득 금액 3,000만 원 이하인 자만 신청 가능 50만 원
	한부모가족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 원

15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하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퇴직연금

김미래 씨(57세)는 2022년 12월 31일에 퇴직할 예정이다. 정년이 60세이므로 아직 3년이나 남았지만, 올해 말에 퇴직하면 법정퇴직금과 별도의 명예퇴직금으로 1억 2,000만 원이나 더 받을 수 있어 명예퇴직을하기로 결심했다.

김미래 씨는 1993년 1월 1일에 입사해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줄곧 한 회사에서 일해 왔다. 김 씨는 과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은 없고, 연말에 퇴직할 때 법정퇴직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여기에 명예퇴직금을 합치면 3억 원인데, 이렇게 퇴직금이 많으면 세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이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 걸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한다. 퇴직소득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일시에 받고자 하면 회사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지급한다. 퇴직자들은 세금을 떼고 남은 돈만 손에 쥐는 셈이다. 이때 손에 쥔 금액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으면 자연스럽게 세금을 제대로 계산한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 도대체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산출하고, 얼마나 내야 하는 걸까?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란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사용자의 부담으로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2조](#) 대표적 인 것이 법정 퇴직급여다. 사용자는 1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에서 정하고 있다. 법정 퇴직급여는 당연히 퇴직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정년이 되기 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법정퇴직금에 더해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기도 하는데, 여기에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최근 들어 경영성과금을 근

로자의 DC형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해 주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이를 수령할 때도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2012년 이전에 근로자가 DC형 퇴직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하며 소득·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 또한 퇴직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은?

지금까지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살펴보았으므로, 지금부터는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을 살펴보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퇴직소득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입사한 다음부터 퇴직할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다. 이 같은 특성을 무시하고 퇴직소득을 퇴직하는 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하면 그해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 분류과세한다.

하지만 퇴직소득을 분류과세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 직장에서 장기간 일하면 퇴직금 규모도 커지기 마

런인데, 여기에 누진세율(6~45%, 지방소득세 별도)을 적용하면 장기 근속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연분연승’이라는 별도의 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먼저 ‘연분’이란 퇴직금을 근속기간으로 나눈다는 뜻이다. 이렇게 근속기간으로 안분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여기에 다시 근속기간을 곱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구하는 것이 ‘연승’이다.

마지막으로 퇴직소득은 노후 생활비 재원이다. 그래서 각종 공제 혜택이 많다. 장기 근속자를 우대하기 위해 근속연수 공제가 대표적이고, 이 밖에 퇴직소득 크기에 따라 환산급여공제도 적용하고 있다.

과세표준과 소득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

* 지방소득세 별도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퇴직급여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	공제액
- 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	30만 원 × 근속연수
× 환산 배수(12배)	10년 이하	150만 원 + 50만 원 × (근속연수 - 5년)
÷ 근속연수	20년 이하	400만 원 + 8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 환산급여	20년 초과	1,200만 원 + 12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 환산급여공제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소득 금액	공제율
× 소득세율	800만 원 이하	100%
= 환산 산출 세액	7천만 원 이하	800만 원 + (800만 원 초과분의 60%)
× 근속연수	1억 원 이하	4,520만 원 + (7,000만 원 초과분의 55%)
÷ 환산 배수(12배)	3억 원 이하	6,17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45%)
= 퇴직소득세	3억 원 초과	1억 5,17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35%)

① 환산급여를 계산한다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려면 환산급여부터 계산해야 한다. 먼저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액을 뺀 금액에 12를 곱한다. 이렇게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것이 환산급여다. 이해를 돕기 위해 김미래 씨의 사례로 돌아가보자. 김미래 씨의 퇴직소득은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더한 3억 원이다. 여기서 먼저 근속연수 공제를 한다. 김미래 씨는 한 직장에서 30년을 일했기 때문에 퇴직급여 3억 원에서 2,400 만 원을 공제받는다. 그러면 2억 7,600만 원이 남는데, 이 금액을 12배 한 다음 근속연수(30년)로 나누면 1억 1,040만 원이 된다. 이 금액을 환산급여라고 한다. 소득세법 제48조①

②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다음 순서는 과세표준을 산출할 차례다. 과세표준이란 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된다. 앞서 산출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 차등 공제액을 빼면 과세표준이 된다. 공제 금액은 환산급여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환산급여가 800만 원 이하면 전액을 공제하고,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금액은 60%, 7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금액은 55%,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금액은 45%, 3억 원 초과 금액은 35%를 공제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김미래 씨가 환산급여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6,638만 원이고, 이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4,402 만 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소득세법 제48조①

③ 산출 세액을 구한다

이제 최종 납부할 세금을 산출할 차례다. 먼저 앞서 산출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구한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것이 최종 산출 세액이다. 김미래 씨는 과세표준이 4,402만 원인데, 여기에 누진 소득세율(15%)을 적용하면 552만 원이 된다. 여기에 근속연수 30년을 곱하고 환산 배수 12로 나누면 산출 세액은 1,380만 원이 된다. 소득세법 제55조①②

마지막으로 퇴직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138만 원)를 더하면 김 씨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1,518만 원이다.

김미래 씨가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

	퇴직급여	30,000만 원
-	근속연수공제	2,400만 원
=		27,600만 원
×	환산 배수	12배
=		331,200만 원
÷	근속연수	30년
=	환산급여	11,040만 원
-	환산급여공제	6,638만 원
=	과세표준	4,402만 원
×	소득세율	(6~45%)
=	환산 산출 세액	552만 원
×	근속연수	30년
÷	환산 배수	12배
=	산출 세액	1,380만 원
+	지방소득세	138만 원
=	총 납부 세액	1,518만 원

퇴직소득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퇴직소득세 금액은 퇴직급여의 크기와 계속 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 퇴직급여가 많을수록, 근속연수가 짧을수록 세 부담이 커진다. 이때 알아둬야 할 것은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통상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말한다. 하지만 재직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에는 중간정산한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근속연수로 본다. 소득

세법 시행령 제105조

여기서는 퇴직급여 크기와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세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 표는 한 직장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로자가 2022년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산해 세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정리한 것이다.

퇴직급여 규모와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소득세 부담(2022년 퇴직 가정)

퇴직급여	근속연수				
	30년	25년	20년	15년	10년
5,000만 원	16만 원	40만 원	65만 원	84만 원	161만 원
1억 원	148만 원	184만 원	295만 원	396만 원	548만 원
1억 5,000만 원	403만 원	514만 원	642만 원	796만 원	1,274만 원
2억 원	733만 원	873만 원	1,049만 원	1,519만 원	2,248만 원
3억 원	1,518만 원	1,980만 원	2,490만 원	3,331만 원	4,637만 원

*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

16

중간정산한 사람은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다고 하던데 맞나요?

퇴직연금

김희철 씨(55세)는 올해 말에 퇴직할 계획이다.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이면 아직 5년은 더 일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지금 명예퇴직하는 것이 나아 보였다. 이런 결심을 한 것은 명예퇴직금 때문이다. 김희철 씨는 7년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 내 집 마련 자금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김희철 씨가 올해 연말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법정퇴직금은 4,000만 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명예퇴직을 하면 3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돈이면 주택 담보 대출도 갚고, 일부는 퇴직한 다음 사업 밑천으로 쓸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문제가 생겼다. 생각했던 것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너무 컸다. 퇴직금을 받아서 대출도 갚고 사업 자금으로도 쓰려고 했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과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서 세 부담이 커졌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다. 만약 그렇다면 세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김희철 씨와 같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경험이 있지 않을까? 퇴직금 중간정산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는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는 걸까? 퇴직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인 데다 노후 생활비 재원으로 사용된다. 퇴직소득의 이런 특성을 감안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 장기 근속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근속연수 공제와 연분연승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근속연수공제가 됐든, 연분연승이 됐든 근속연수가 길어야 유리하다. 그런데 중간정산을 하면 근속연수가 짧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근속연수라고 하면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하지만, 김희철 씨처럼 퇴직금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중간정산한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를 근속연수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①

중간정산한 다음 날부터 근속연수 계산

그러면 김희철 씨의 퇴직과 관련한 자료를 바탕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해 보자. 김희철 씨의 퇴직급여는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쳐 3억 4,000만 원이다. 그리고 과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다음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 근속연수는 7년이다.

이를 기초로 계산해 볼 때 김희철 씨가 퇴직할 때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는 6,824만 원(지방소득세 620만 원 포함) 가량이 나 된다. 퇴직급여로 받은 돈의 20% 가량을 세금으로 내는 셈이다. 세 부담이 이렇게 큰 것은 3억 4,000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중간정산 이후 7년 동안 벌어들였다고 보고 퇴직소득세를 산출했기 때문이다.

김희철 씨의 퇴직소득 관련 자료

- **금번 퇴직금 관련 자료(DB형 퇴직연금 가입)**
입사한 날: 1993년 1월 1일
퇴직한 날: 2022년 12월 31일
법정퇴직금: 4,000만 원
명예퇴직금: 3억 원
- **과거 중간정산 당시 퇴직소득 관련 자료**
중간정산일: 2015년 12월 31일
중간정산 퇴직급여: 1억 6,000만 원
납부한 퇴직소득세: 541만 원(지방소득세 49만 원 포함)

중간정산 퇴직금을 합산해 계산하면 세 부담 덜 수 있어

중간정산을 했다고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야 한다면 억울하지 않을까? 만약 세 부담이 이렇게 커질 줄 알았다더라면 중간정산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과거로 시간을 되돌릴 순 없을까? 타임머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하지만 퇴직소득 세액 정산 특례를 이용하면 과거에 중간정산 받은 것을 받지 않은 것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

퇴직소득 세액 정산이란 과거 중간정산한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다. 퇴직자가 과거 중간정산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서 정산 요청을 하면 회사는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48조①②](#)

정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는 중간정산 때 이미 지급한 퇴직금과 앞으로 퇴직금을 합산해 퇴직소득세를 산출하고, 중간정산 때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세를 빼준다. 이때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때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앞으

로 지급할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를 합한 다음 중복되는 기간을 뺀 것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①②③](#)

그러면 김희철 씨가 퇴직소득 세액을 정산하면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중간정산 퇴직금과 최종 퇴직금을 합치면 퇴직소득은 5억 원이 된다. 그리고 중간정산 이전(23년)과 이후(7년)를 합치면 근속연수는 30년이다. 이를 기초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면 3,977만 원이 나온다. 여기서 과거 중간정산 때 납부한 세금 492만 원을 빼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은 3,485만 원이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348만 원을 더하면 김희철 씨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3,833만 원이다. 앞서 세액 정산을 하지 않았을 때 6,824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세금을 2,991만 원이나 절약한 셈이다. 따라서 김희철 씨처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거나,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 인출한 다음 얼마 되지 않아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활용해 퇴직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밖에 종업원이 임원이 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했거나, 회사의 합병, 분할과 같은 조직 변경이나 계열사 진출 등을 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퇴직소득 정산 특례를 이용할 수 있다.

김희철 씨의 퇴직소득세액 정산 전후의 세 부담 비교

	정산특례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	정산특례를 활용했을 때
퇴직급여	34,000만 원	50,000만 원
- 근속연수공제	250만 원	2,400만 원
=	33,750만 원	47,600만 원
× 환산 배수(2배)	12배	12배
=	405,000만 원	571,200만 원
÷ 근속연수	7년	30년
= 환산급여	57,857만 원	19,040만 원
- 환산급여공제	24,920만 원	10,238만 원
= 과세표준	32,937만 원	8,802만 원
× 소득세율	(6~45%)	(6~45%)
= 환산 산출 세액	11,698만 원	1,750만 원
× 근속연수	7년	30년
÷ 환산 배수	12배	12배
= 산출 세액	6,204만 원	3,977만 원
- 기납부 세액	0만 원	492만 원
= 퇴직소득세	6,204만 원	3,485만 원
+ 지방소득세	620만 원	348만 원
= 총 납부 세액	6,824만 원	3,833만 원

17

퇴직급여 수령과 세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퇴직연금

한 회사에서 30년을 넘게 일한 배동현 씨(58세)는 다음 달 퇴직을 앞두고 있다. 정년퇴직까지는 아직 2년이 더 남아 있기는 하지만, 회사에서 이번에 희망 퇴직을 신청하면 명예퇴직금을 좀 더 준다고 하기에 고민 끝에 희망퇴직을 신청하기로 했다. 김 씨는 현재 확정 급여(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다. 회사 인사부에서는 배동현 씨에게 퇴직급여를 IRP로 받을지 아니면 현금으로 수령할지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연 이자(연 20%)를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①, 시행령 제17조](#)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방법은 퇴직자의 나이, 퇴직급여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다.

퇴직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이체하는 경우

먼저 퇴직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고, 퇴직 당시 나이가 만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법정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해야 한다. 물론 퇴직 당시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에도 퇴직자가 희망하면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7조④, 제20조⑥⑦](#)

이때 퇴직을 앞둔 근로자는 금융회사에서 IRP로 개설해야 한다. 현재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면 해당 금융회사에서

IRP를 만들어도 되지만,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해도 무방하다. 다른 금융회사에서 IRP를 개설할 때는 기존에 퇴직연금을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자 확인서’를 출력해서 가면 된다. 이미 IRP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새로이 계좌를 만들 필요 없이 기존 IRP에 퇴직금을 이체할 수도 있다.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세금을 전혀 안 내는 것은 아니고, IRP에서 퇴직급여를 인출하는 시점에 세금을 부과한다. 이때 퇴직급여를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실제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실제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절감하는 셈이다. 하지만 연금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수령하면 본래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29조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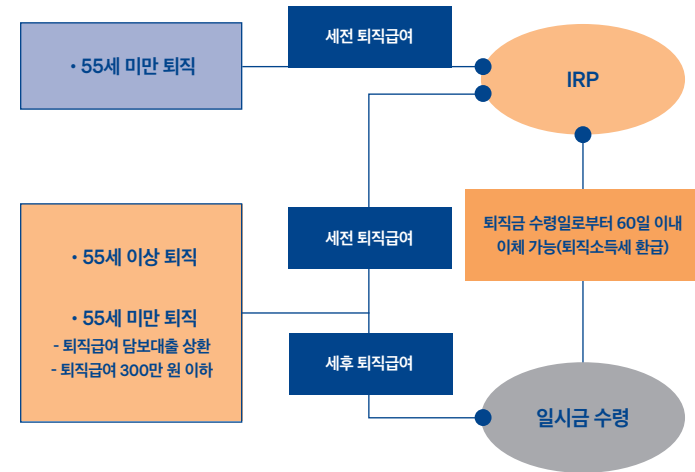
퇴직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 가입자는 물론이고 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연금 미가입자도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로 이전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는 퇴직자의 선택에 따라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고, IRP로 이체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법정 퇴직급여가 아닌 명예퇴직금도 퇴직자의 선택에 따라 IRP로 이체할 수도 있고 일시에 수령할 수도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9조

그러면 배동현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배동현 씨는 퇴직연금에 가입해 있기는 하지만 이미 55세가 넘었기 때문에 본인이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할지, 일시금으로 수령할지를 선택하면 된다. 만약 배동현 씨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기로 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고 남은 금액만 수령하게 된다. 배동현 씨가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하겠다고 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고 퇴직급여 전액을 지정한 IRP로 수령하게

된다. 소득세법 제146조①

퇴직자 상황별 퇴직급여 수령 방법



* 2022년 4월 14일 이후 시행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

그렇다면 퇴직할 때 회사가 원천징수 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 가능하다.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 일 이

내에 이미 수령한 퇴직급여를 IRP에 입금하면 된다. 이미 IRP를 가지고 있으면 해당 계좌로 이체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금융회사를 방문해 새로이 IRP를 개설한 다음 이체하면 된다.

이때 이미 수령한 퇴직급여를 전부 이체할 필요는 없다. 이미 퇴직급여 중 일부를 사용했다면 남은 금액만 IRP에 입금해도 된다. 퇴직급여 중 일부만 IRP에 입금하면 퇴직소득세도 해당 비율만큼만 환급받는다. [소득세법 제146조②](#)

퇴직한 다음 금융회사에서 IRP를 신규로 개설할 때는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한데, 퇴직한 회사 또는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다. 퇴직자가 금융회사에 IRP를 개설한 다음 퇴직금을 입금하면 해당 금융회사는 ‘과세이연 계좌 신고서’를 만들어 퇴직한 회사로 송부한다. ‘과세이연 계좌 신고서’란 퇴직금이 IRP로 입금되었으니 회사가 원천징수 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로 보면 된다. 회사에서는 과세이연 계좌 신고서를 수령하면 전체 퇴직급여 중 IRP로 다시 입금된 금액의 비율을 확인한 다음 해당 비율만큼 원천징수 한 퇴직소득세를 IRP로 송금해 준다. 과정이 복잡하지만 퇴직자가 신경 쓸 일은 없다. 일단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하기만 하면 나머지 일은 금융회사과 퇴직한 회사가 알아서 해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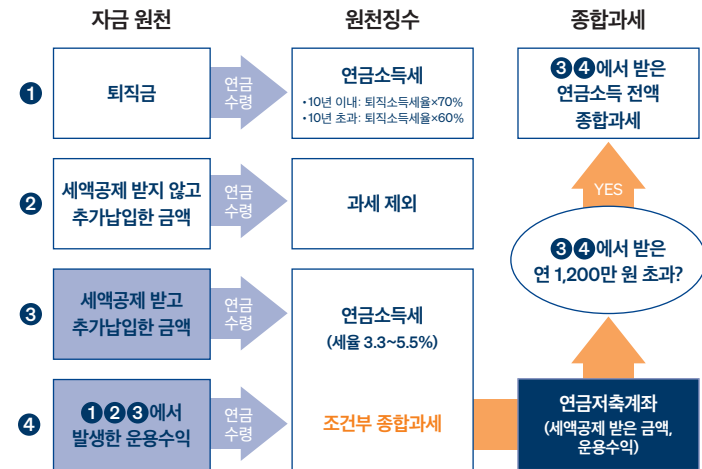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얼마나 내나요?

얼마 전 퇴직한 오창민 씨(60세)의 보물 1호는 평생 일하며 모아온 노후 자금이 담긴 IRP와 연금저축이다.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IRP에 이체했고,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매년 연금저축과 IRP에 추가로 적립한 돈도 꽤 많다. 최근에는 해외펀드 투자에 따른 세금을 절약하려고 이들 계좌에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투자한 금액도 있다. 세액공제는 받지 못하더라도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뒤로 미루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한 우려도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오창민 씨의 경우처럼 IRP와 연금저축 계좌 내에는 퇴직금과 세액공제 받은 돈, 세액공제 받지 않은 돈, 운용 수익 등 다양한 자금이 모여 있다. 그렇다면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은 자금 원천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는 걸까?

연금저축과 IRP와 같은 연금계좌에 적립된 자금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같은 ‘연금소득세’라는 이름이 붙어 있긴 하지만 자금 원천이 무엇이나에 따라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다.

연금계좌에 쌓인 적립금은 그 원천에 따라 ①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한 금액 ②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 ③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 ④ 퇴직금과 추가 적립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연금을 받을 때 자금 원천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살펴보자. 소득세법 제20조의3D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연금 수령할 때 과세 절차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먼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대신 나중에 연금계좌에서 퇴직급여를 인출할 때 세금을 부과한다. 이때 법에서 정한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세율은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다르다. 실제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 이하일 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실제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면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세금이 부과된다. [소득세법 제129조①](#)

앞서 오창민 씨의 퇴직급여가 1억 원이고, 이를 일시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로 1,000만 원을 납부했어야 한다고 치자. 오창민 씨는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기로 했다. 오 씨가 10년 동안 매년 1,000만 원씩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연금소득세로 얼마를 납부해야 할까? 오 씨의 퇴직소득세율은 10%이다. 따라서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7%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오 씨는 10년 동안 연금소득세로 매년 70만 원씩 납부하게 된다. 좀 더 정확

히 말하자면 IRP를 개설한 금융회사에서 매년 연금을 지급하면서 연금소득세로 70만 원을 원천징수 하고 남은 930만 원을 오 씨에게 지급한다. 오 씨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매년 70만 원씩 총 700만 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므로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할 때보다 세금을 30%(300만 원) 절약할 수 있다.

오 씨가 20년 동안 매년 500만 원씩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연금소득세로 얼마나 납부해야 할까? 이 경우 10년 차까지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은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7%가 적용되고, 11년 차부터 2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6%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10년 차까지 매년 35만 원, 11년 차부터 20년 차까지는 매년 30만 원씩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오 씨 입장에서는 20년 동안 총 650만 원을 연금소득세로 납부하게 되므로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할 때보다 350만 원을 절약하게 되는 셈이다. 이뿐만 아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종합과세에 대한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흔히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사람이 많은데, 퇴직급여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소득](#)

[세법 제14조③](#)

세액공제 받지 않은 적립금을 인출할 때

연금계좌에는 퇴직급여뿐만 아니라 가입자가 추가로 자금을 적립할 수 있다.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 중에는 매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금액도 있다. 가입자가 매년 연금계좌에 최대 1,800만 원까지 적립할 수 있는 데 반해,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저축한 금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저축 금액은 인출할 때 아무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연금계좌에 저축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니 연금을 받을 때도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다. 다만 여러 금융회사에 연금계좌가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려면 별도의 증빙 서류(연금보험료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연금저축과 IRP를 개설한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관할 지방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이제 남은 것은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이다. 이들 자금을 재원으로 연금을 지급할 때 금융회사에서는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데, 세율은 연금 수급 시기와 수령 방법에 따라 다르다. [소득세법 제129조](#)

연금을 받을 때 가입자 나이가 만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만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3.3%의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라도 세율이 달라지는데, 종신연금을 선택하면 70세 미만인 경우에도 4.4%로 시작하여 80세 이후에는 3.3%의 세금이 부과된다. [소득세법 제129조①](#)

저축할 때 세액공제율이 13.2%(저소득자 16.5%)이고, 일반 금융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에 15.4%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연금소득세율은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을 재원으로 해서 받은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어가면 해당 연금소득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 세율로 과세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넘지 않아도 가입자가 원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4조③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

연금 수령 시기(연금 수령일 현재)	연금소득세율	중신연금 수령 시
55세 이상 70세 미만	5.5%	4.4%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3.3%

* 연간 1,200만 원 이상 수령 시 전액 다른 소득과 합산 종합과세

19

한 해에 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대기업 임원으로 일했던 고재일 씨(60세)는 올해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 5억 원을 전부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받기로 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30~40%나 줄일 수 있다는 금융회사 담당자 말에 귀가 솔깃했기 때문이다.

고재일 씨가 퇴직급여를 일시에 수령할 때 세금을 계산해 봤더니 5,000만 원이나 됐다. 이 금액의 30%만 아껴도 1,500만 원인데,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어디에 투자해서 이만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연금계좌에 퇴직급여를 이체하고 나니, 이래저래 궁금한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한 해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목돈을 꺼내 쓸 수는 없는 걸까? 가능하다면 이때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연금저축과 IRP와 같은 연금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비교적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한번에 많은 금액을 빼 쓰지 못하도록 연금 수령 한도를 두고 있다. 그러면 연금 수령 한도는 얼마나 되고,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자금을 인출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살펴보자.

연금 수령으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연금 수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서 인출해야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다음 해외로 이주하면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급여를 연금 수령으로 본다.

연금 수령으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가입자가 55세 이후 금융회사에 연금 개시를 신청한 후에 인출해야 한다. 둘째,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이 경과한 다음에 인출해야 한다. 다만 퇴직급여가 이체되어 있는 연금계좌는 그렇지 않다. 고재일 씨처럼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는 55세 이후에는 언제든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다. 셋째,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한다. 다만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할 때는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요건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③](#)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금계좌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 이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연금 계좌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밖에 연금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파산한 경우,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④](#)

연금 수령 한도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금 수령 한도에 대해 살펴보자.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하려면 먼저 연금계좌를 평가해야 한다.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해에는 연금 개시를 신청한 날의 연금계좌 잔고가

여기에 해당되고, 이듬해부터는 매년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현재 연금계좌 잔고를 평가하면 된다.

다음은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에서 연금 수령 연차를 뺀 숫자로 나눌 차례다. 연금 수령 연차란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1년 차 기산 연차로 하여, 그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한다.

다만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해를 6년 차로 기산한다. 2013년 3월 이전에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면서 퇴직급여 전액을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해를 6년 차로 기산한다. 이렇게 계산해 나온 금액의 120%가 그해 연금 수령 한도가 된다. 다만 연금 수령 연차가 11년 이상이면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고 연금 수령 한도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④](#)

$$\frac{\text{과세기간 개시일(연금 수령 개시 신청일) 연금계좌의 평가액}}{(11 - \text{연금 수령 연차})} \times 120\%$$

그러면 고재일 씨의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해 보자. 고재일 씨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바로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연금계좌에는 퇴직급여 이외에 다른 돈은 없기 때문에 연금계좌 평가액은 5억 원이다. 다음은 연금 수령 연차를 계산할 차례다. 고재일 씨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했다더라도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했다면 연금 수령 연차는 '1년 차'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되면 고재일 씨의 첫째 연금 수령 한도는 6,000만 원이 된다.

$$\text{1년 차 연금 수령 한도} = \frac{5\text{억 원}}{(11 - 1)} \times 1.2 = 6,000\text{만 원}$$

* 2013년 3월 1일 이후 퇴직연금 가입

1년 차에 연금 수령 한도에 못 미치는 금액을 인출하면 다음 해 연금 수령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처음 연금을 개시하는 해를 제외하면 연금 수령 한도는 매년 1월 1일에 다시 계산한다. 고재일 씨가 첫째에 연금으로 5,000만 원을 찾아 쓰고, 적립금을 운용해 9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렇게 되면 2년 차 1월 1일에 연금계좌 잔고는 4억 5,900만 원이다. 이

를 기초로 계산한 2년 차 연금 수령 한도는 6,120만 원이다. 같은 방식으로 10년 차가 될 때까지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11년 차부터는 연금 수령 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text{2년 차 연금 수령 한도} = \frac{4\text{억 } 5,900\text{만 원}}{(11 - 2)} \times 1.2 = 6,120\text{만 원}$$

* 2013년 3월 1일 이후 퇴직연금 가입

이번에는 고재일 씨가 2013년 3월 1일 이전에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했고, 퇴직급여를 전부 연금계좌에 이체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연금 수령 연차가 '6년 차'부터 시작하므로 첫째 연금 수령 한도는 6,000만 원이 아니라 1억 2,000만 원이 된다. 퇴직 후 5년이 지나면 연금 수령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text{1년 차 연금 수령 한도} = \frac{5\text{억 원}}{(11 - 6)} \times 1.2 = 1\text{억 } 2,000\text{만 원}$$

* 2013년 3월 1일 이전 퇴직연금 가입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할 때 세금은?

매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계좌 적립금을 인출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연금소득세는 자금 원천에 따라 다르다.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실제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 차가 될 때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고,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세액공제를 받은 저축 금액과 운용 수익을 인출할 때는 나이와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3.3~5.5%의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러면 고재일 씨의 연금소득세를 계산해 보자. 고재일 씨가 퇴직급여 5억 원을 일시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로 5,0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므로, 퇴직소득세율은 10%가 된다. 하지만 고 씨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한 다음 매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 차 이후 60%)에 해당하는 7%(11년 차 이후 6%)의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고 씨가 첫째 6,000만 원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

세로 420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나?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연금계좌 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하지만 이때는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을 ‘연금 외 수령’으로 간주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⑤ 세금 계산 방식은 자금 원천에 따라 다르다. 먼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은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해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연금 외 수령 하면 할인 혜택 없이 본래 퇴직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해 세금을 부과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을 연금 외 수령 하면 기타소득세(16.5%)를 납부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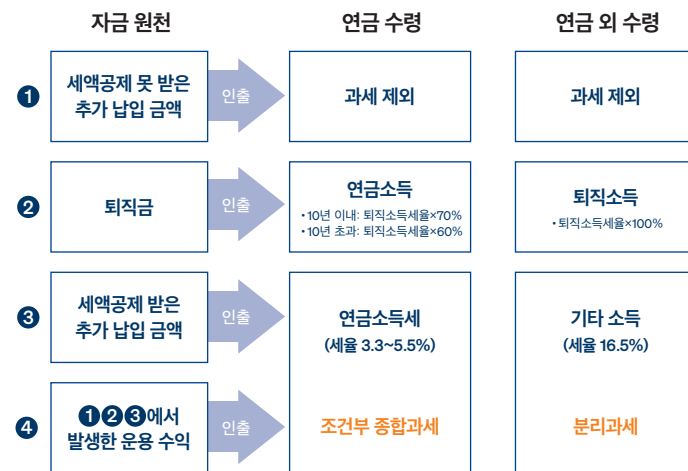
그러면 다시 고재일 씨의 사례로 돌아가보자. 고재일 씨가 올해 연금 수령 한도가 6,000만 원인데, 1억 원을 인출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에는 연금 수령 한도 이내인 6,000만 원

까지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만, 나머지 4,000만 원은 ‘연금 외 수령’으로 보아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된다. 6,000만 원에는 7% 세율을 적용해 42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나머지 4,000만 원에는 10% 세율을 적용해 4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이 둘을 합치면, 고 씨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820만 원이 된다.

고재일 씨가 첫 해 납부해야 할 세금

• 연금 수령 한도 이내 :	6,000만 원 × 연금소득 세율(7%) = 420만 원
• 연금 수령 한도 초과 :	4,000만 원 × 퇴직소득 세율(10%) = 400만 원
첫해 납부해야 할 세금	820만 원

연금 수령과 연금 외 수령에 따른 과세



연금을 받을 때 적립금은 어떤 순서로 인출되나요?

이대호 씨(55세)는 퇴직금을 전부 IRP 계좌로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수령할 계획이다. 그런데 해당 IRP 계좌에는 퇴직금뿐만 아니라 이대호 씨가 직장 다니면서 추가로 저축한 금액도 함께 적립되어 있다. 추가 적립금 중에는 매년 연말정산을 할 때마다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도 있고,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저축하여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도 있다. 그리고 추가 저축 금액과 퇴직급여를 운용해서 얻은 이자와 배당수익도 있다. 이 경우 이대호 씨가 연금을 개시하면 적립금 중 어떤 것부터 인출되고, 또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연금저축과 IRP와 같은 연금계좌에는 다양한 자금이 섞여 있다. 매년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한 금액도 있고,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 저축한 금액도 있고,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도 있고, 앞서 말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을 개시하면 어떻게 될까? 연금계좌에서 각각의 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맞춰 일정한 비율로 연금을 인출할까,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일까?

적립금은 어떤 순서로 인출되나?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할 때는 인출 순서가 정해져 있다. 이때 세 부담이 적은 순서로 인출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첫 번째는 과세 제외 금액이다. 쉽게 말해서 연금계좌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금액이다. 과세 제외 금액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인출된다. 먼저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이 인출된다. 다음 순서는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저축한 금액을 인출한다. 이 밖에 저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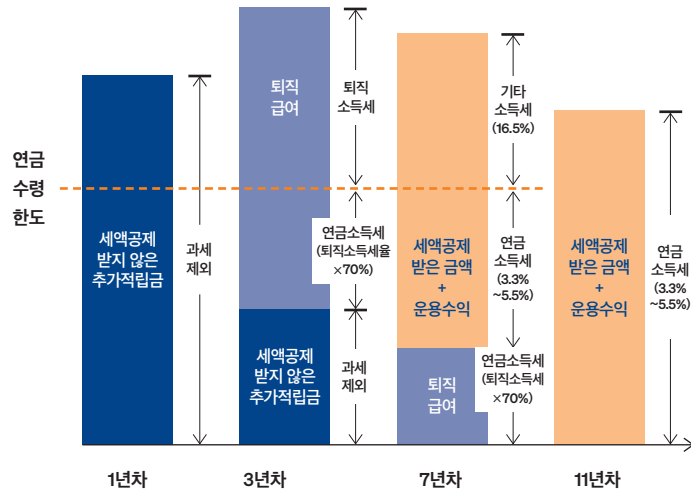
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마지막 순서로 인출한다.

과세 제외 금액을 전부 인출하고 나면 다음 순서로 퇴직급여를 인출한다. 이때 인출된 금액이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다음으로 연금 외 수령분을 인출한 것으로 본다. 연금 수령분에는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 차 이후 6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고, 연금 외 수령분에는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부과한다. 마지막 순서로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한 금액과 연금계좌에서의 운용 수익이 인출된다. 이때도 연금 수령 한도 이내에서 인출한 금액에는 비교적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

조의3

이해를 돕기 위해 2013년 3월 1일 이후에 연금계좌에 가입한 사람을 예로 들어보자. (다음 그림 참조)이 경우 연금 개시 이후 10년간 연금 수령 한도가 적용된다. 연금계좌에는 퇴직급여,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 세액공제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 운용 수익이 적립되어 있다. 1년 차에는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자금을 인출했지만, 인출 금액이 모두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이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 연금 수령 연차가 3년째에 접

연금계좌 내 적립금 인출 순서와 과세 방법



어 들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저축 금액은 전부 빠져나가고, 이 때부터는 퇴직급여가 인출되기 시작한다. 퇴직급여 중에서 연금 수령 한도 이내에서 인출한 금액에는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율의 70%)가 부과되지만,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에는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부과된다.

7년 차에 접어들어 퇴직급여가 전부 소진되고 나면 이제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과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이

인출되기 시작한다. 이때 퇴직급여는 연금 수령 한도 이내에서 인출한 것이므로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율의 70%)가 부과된다. 세액공제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하면 비교적 낮은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된다. 하지만 연금 수령 한도를 벗어나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보아 기타소득세(16.5%)를 부과한다.

11년 차 이후부터는 연금 수령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을 인출할 때 일괄적으로 연금소득세(5.5~3.3%)를 원천징수 한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즉시연금 가입자도 연금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오랫동안 가락시장에서 과일 도매상을 하던 이경순 씨(65세)는 올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장 일이 점점 버거워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게를 팔아서 생긴 목돈을 즉시연금에 넣고 다달이 생활비를 받을 계획이다. 그런데 즉시연금에 가입하고 연금을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내야 할까? 통상 연금보험은 가입한 다음 10년은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즉시연금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바로 연금을 받는 데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저축성 보험 가입자가 보험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즉시연금 가입자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즉시연금 가입자는 보험 계약을 하고 바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앞서 말한 10년 유지 조건을 어기는 것 아닐까? 만약 그렇다면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것 아닐까? 즉시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는 것 아닐까? 즉시연금에 대한 과세 여부는 보험 가입 시기와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③④

확정형 연금은 보험차익 과세

연금보험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는 확정형, 상속형, 종신형이 있다. 먼저 확정형 연금부터 살펴보자. 확정형 연금은 보험 가입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서 수령하는 구조다. 다른 연금 형태와 비교했을 때 연금액이 가장 많아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문제는 세금이다. 보험료를 최초로 납입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분할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시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먼저 납입한 보험료부터 인출하고 다음으로 보험차익이 인출된다. 따라서 수령한 연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처럼 세금 문제가 복잡해서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확정형 연금을 제시하지 않는 즉시연금 상품이 많다.

상속형 연금은 계약 금액 1억 원까지 비과세

상속형 연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 이자만 수령하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는 구조이다. 따라서 연금 재원이 소멸되는 것을 바라지 않거나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다면 상속형 연금을 선택해 볼 만하다.

상속형 연금은 가입 시기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다르다. 2013년 2월 14일 이전에 즉시연금에 가입하고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후 비과세 한도가 단계적으로 축소됐다. 2017년 3월

31일까지는 1인당 비과세 한도가 2억 원이었고, 4월 1일 이후 부터는 1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아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납입 한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즉시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종신형 연금은 조건만 충족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종신형 연금은 보험 가입자가 살아 있을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 되, 조기 사망에 대비해 보증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연금액은 상속형보다는 많지만 확정형보다는 적다. 다른 연금 수령 방법 과 달리 일단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 문에 순수 노후 생활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2013년 2월 14일까지만 하더라도 보험 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기만 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었 다. 하지만 이후부터 비과세 조건이 까다로워졌다. 먼저 계약자 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해야 한다. 연금은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는데, 일단 연금이 개시되면 해지가 불가능하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연금 재원이 소멸해야 하는데, 다만 피보험 자가 조기에 사망할 때에 대비해 보증 지급기간을 둘 수 있다. 하지만 이때도 보증 지급기간이 피보험자의 기대 수명보다 짧

“해지할까요, 아니면 연금으로 받아야 하나요?” 정년퇴직을 앞둔 김근수 씨 (54세)가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며 물었다. 가입한 지 20년도 더 된 개인연금저축 통장이었다. “어떻게 가입한 거냐”고 물었더니 “20여 년 전 회사에서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저축 금액 중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가입했다”고 하면서, “회사 지원이 중단된 지는 오래됐지만, 저축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씨는 “매년 소득공제 한도는 채우자는 생각으로 20년 넘게 저축했더니 어느새 원금만 5,000만 원 넘게 쌓였다”고 하며, 퇴직하면 “적립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40~50대 직장인들 중에는 김근수 씨와 같이 오래된 개인연금 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저축 금액에 공제 혜택을 주는 개인연금저축 상품은 가입 시기에 따라 크게 둘로 나뉜다. 1994년 6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판매된 것을 (구) 개인연금저축이라고 하고, 2001년에 새로이 출시된 것을 연금저축이라고 부른다. 김근수 씨가 가입한 것은 (구)개인연금저축이다.

(구)개인연금저축은 이미 판매가 중단됐기에 새로이 가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미 가입한 사람은 계속 저축하면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가입자는 매 분기마다 3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고, 매년 저축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72만 원이다.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려면 매년 180만 원(월 15만 원)씩 저축하면 된다.

중도해지하면 불이익은 없나?

(구)개인연금저축 가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대신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연금은 가입자가 55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면 받을 수 있다. 또 최소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을 모두 갖추면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저축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인출할 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은 (구)개인연금저축이 유일하다.

당연히 연금 수령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이익이 따른다. 납입기간이 끝나기 전에 중도해지할 수도 있고, 납입기간이 끝났더라도 55세 이전에 자금을 인출할 수도 있고, 연금 개시한 지 5년이 안 되어 해지할 수도 있다. 이때는 (구)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소득세(15.4%)를 부과한다. 이게 다가 아니다. 중도해지한 해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세 부담이 커진다. 우리나라는 한 해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 한다.

그래도 목돈이 필요해 중도해지를 할 수밖에 없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한다. 먼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하더라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 밖에 가입자가 퇴직하거나,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요양이 필요해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이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후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고 6개월 이내에 해지해야 한다. 김근수 씨도 퇴직하고 6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이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금융회사로 적립금을 옮길 수 있나?

납입기간이 끝나고 연금 수령 조건을 갖췄다고 무조건 연금을 개시할 필요는 없다. 필요하다면 납입기간을 연장해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추가로 저축을 하지 않더라도 연금 개시 시기를 뒤로 미루면 적립금을 비과세로 운용할 수 있다.

서비스나 수익률에 불만이 있다면 적립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이체할 수 있다. 과거에는 계좌 이체를 하려면 기존 금융회사와 신규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했지만, 지금은 신규 회사 한 곳만 방문하면 된다. (구)개인연금저축은 신규 금융회사의 (구)개인연금저축으로만 이전할 수 있다.

계좌를 이체할 때는 현재 가입하고 있는 상품과 새로이 가입할 상품의 특징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구)개인연금저축은 판매회사에 따라 크게 보험, 신탁, 펀드가 있다. 최근에는 시

중금리가 떨어지면서 보험이나 신탁 상품을 펀드로 이체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계좌 이체를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보험 가입자는 금리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판매된 보험은 최저 4% 이상 금리를 보증해주는 것이 많고, 7%대 확정 금리를 주는 상품도 있다.

(구)개인연금저축 상품의 특징

가입 시기	1994년 6월~2000년 12월
납입 한도	분기 300만 원
소득공제	저축 금액의 40%(연간 최대 72만 원)
연금 수령 요건	가입기간 10년 이상, 만 55세 이후, 최소 5년 이상
연금 수령 과세	비과세
중도해지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일반적인 경우 이자소득세(15.4%) 부과 ② 부득이한 경우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 다음 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자의 퇴직 또는 사업장의 폐업 -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이 필요한 질병·상해 발생 -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파산선고 등 - 천재지변
상품 운용	단일 상품 투자

증권사로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가 제공하는 상품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동시에 여러 펀드를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지만, (구)개인연금저축 가입자는 하나의 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다. 따라서 변동성을 줄이려면 특정 지역이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보다는 다양한 지역과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4 연금의 상속·증여와 세금

23 국민연금 | 유족연금은 누가 받고 세금은 얼마나 내나요?

24 연금계좌 | 가입자가 사망해서 배우자가 승계해도 불이익은 없나요?

25 연금보험 | 계약자를 변경해도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나요?

26 연금보험 | 연금을 상속하면 세금은 누가 얼마나 내나요?

맞벌이를 하던 김유리 씨(46세)는 얼마 전 교통사고로 남편 최봉수 씨(50세)를 여의었다. 샐러리맨이던 남편은 대학 졸업 후 20년 넘게 건설 회사에서 일했다. 김유리 씨는 유통 회사에서 일하는데 월 소득은 200만 원 정도 된다. 그리고 김유리 씨의 부양가족으로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아들(19세)과 초등학생 딸(12세)이 있다. 앞으로 살아갈 계획을 세워야 하는 김유리 씨는 다음 두 가지가 궁금하다. 남편의 사망으로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유족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납부해야 할까?

국민연금의 장점 중 하나로 살아 있는 동안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령자가 사망한 다음에도 유가족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바로 유족연금이다. 그렇다면 유족연금은 누가, 어떤 경우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어떤 경우에 유족연금이 지급되나?

유족연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될까? 먼저 노령연금을 수령하던 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장애 등급 2급 이상으로 장애연금을 수령하던 자가 사망했을 때도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이때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한 날까지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해도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전체 가입 대상 기간 중 체납한 기간이 3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유족연금은 누가 수령하나?

국민연금법에서 유족이라고 하면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말하는데, 이 중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1순위자는 배우자다. 배우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조건은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하면 된다. 같은 순위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같은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지만, 유족이 대표자를 선정해 한 사람이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유족연금 최우선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우자다.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 통상 상속세법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인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국민연금법은 사실혼 관계도 부부 사이로 인정해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실혼 관계 여부는 법원 판결이나 다른 공적 기관이 판단을 내린 자료가 있으면 이를 근거로 결정한다. 하지만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직접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로 함께 생활했는지 등을 파악해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유족연금 수령 순위

수령 순위	대상	충족 요건
1순위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2순위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3순위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4순위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5순위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 등급 2급 이상

* 부모 및 조부모의 유족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단, 지급 사유 발생일이 2013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 한함)

유족연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유족연금의 급여 수준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먼저 기본 연금액부터 살펴보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

우에는 기본 연금액의 40%, 10~20년 사이일 때는 50%,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일 때는 60%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해 유족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유족연금 급여 수준

가입기간	연금액
10년 미만	기본 연금액 40% + 부양가족 연금액
10년 이상~20년 미만	기본 연금액 50% + 부양가족 연금액
20년 이상	기본 연금액 60% + 부양가족 연금액

유족연금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

유족연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유족연금 수령자가 배우자인 경우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 동안은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5세(1953~1956년생 56세, 1957~1960년생 57세, 1961~1964년생 58세, 1965~1968년생 59세)가 될 때까지는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배우자가

장애 등급 2급 이상이거나, 사망자의 25세 미만 자녀나 장애 등급 2급 이상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 정지를 하지 않는다.

유족연금 수급자의 평균 소득 월액이 ‘A값’보다 많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본다. ‘A값’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을 말하는데, 2021년의 경우 253만 9,734원이다. 유족연금 수급자의 평균 소득 월액을 계산할 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합산한다. 이때 사업소득에서는 필요 경비를, 근로소득에서는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다음 월평균 소득을 산출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간 근로소득공제 전 급여가 4,203만 1,552원만 넘지 않으면 유족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 수급자의 신분 관계에 변동이 생기거나 생계 보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한다. 유족연금 수급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거나, 수급자인 자녀가 25세가 되거나, 손자녀가 19세가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빚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될까? 그렇지 않다.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고, 유족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상속 포기가 취소되는 것도 아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유족에게 주어지는 국민연금법상의 권리다. 다시 말해 유족연금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는 얘기다.

유족연금을 수령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하나?

노령연금과 달리 유족연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참고로 장애연금과 사망일시금에도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조](#) 상속세를 산출할 때도 유족연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가입자가 사망해서 배우자가 승계해도 불이익은 없나요?

이성순 씨(53세)의 배우자 이무겸 씨(55세)는 얼마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노후 자금도 마련할 요량으로 10년 전 연금저축에 가입한 이무겸 씨는 매년 40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하며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자 이성순 씨는 남편의 연금저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당장 해지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본인이 계약을 승계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나을까?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사람 일이란 게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 본래 연금저축이라는 것이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입하는 것이지만, 이무렵 씨처럼 갑작스레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으로 일찍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상속인은 사망자가 남겨둔 연금저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일반 금융 상품이라면 당장 해지하고 상속인 명의로 다시 가입하면 되겠지만, 연금저축은 합부로 그럴 수가 없다. 연금저축 가입자는 연말정산 때 저축 금액을 세액공제 받는 대신 적립금을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적립금을 중도인출하거나 연금저축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뭔가 좋은 수가 없을까?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먼저 사망자가 가입한 연금저축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살펴보자.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 받으며 저축한 금액과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이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연금저축 가입자가 가능하면 중도에

해지하지 말고 연금을 수령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이무렵 씨처럼 가입자가 사망해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 세법에서는 가입자 사망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수령할 때와 마찬가지로 연금소득세(3.3~5.5%)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소득과 분리과세한다. 따라서 종합과세로 세 부담이 늘어날 걱정도 없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가입자 사망 이외에 세법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는

- 가입자의 해외 이민
-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장기 요양
-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 회생 절차 개시
-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등이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연금저축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

연금저축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해당 계약을 승계할 수도 있다.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저축을 승계하려면 사망한 날

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금융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6개월 이내에 승계 신청을 하지 않고, 6개월이 지난 다음 해지하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러면 배우자는 연금저축을 승계받은 다음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금을 받으려면 ‘가입기간 5년 이상’과 ‘만 55세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때 가입기간은 피상속인(사망자)이 최초로 연금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기산한다. 그리고 연금개시 연령은 승계를 받은 배우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성순 씨의 경우 가입기간은 이미 5년을 경과했으므로 2년 후 55세가 된 다음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44조, 시행

령 제100조의2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소득세율은 계약을 승계받을 배우자의 연령과 수령 방법에 따라 3.3%에서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연금저축을 승계받은 다음에 해지를 하거나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 적립금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25

계약자를 변경해도 비과세 혜택은 유지되나요?

몇 달 전 최영주 씨(53세)는 남편 송주호 씨(53세)와 이혼하면서 연금보험 계약자를 변경했다. 연금보험에 가입할 당시만 하더라도 부부 사이가 원만했기 때문에 계약자와 수익자를 누구로 할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에 피보험자만 본인 이름으로 해뒀다. 그러다 이번에 이혼 과정에서 남편으로 되어 있던 계약자와 수익자를 모두 자신으로 바꿨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문제가 생겼다. 최영주 씨 계산으로는 연금보험에 가입한 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연금보험에 가입한 날이 아니라 계약자 변경을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닌가? 정말일까?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 보험 상품 가입자가 처음 보험료를 납부한 날부터 만기일이나 중도에 해지한 날까지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 계약을 하고 계약 내용을 전혀 변경하지 않았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 중간에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⑥

보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먼저 최영주 씨처럼 중도에 보험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부터 살펴보자.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최초로 저축성 보험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다. 2013년 2월 14일 이전에 가입했다면 계약자 변경을 했든, 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최초 가입일로부터 보험계약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2013년 2월 15일 이후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사정이 다르다. 이때부터는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 계약의 최초 납입일로 본다. 따라서 계약 변경일로부터 10년이 지나야 보험차익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계약자가 사망해 부득이하게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적립식 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 변경 전을 포함해 전체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한다.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최근 종신보험과 연금보험 기능을 둘 다 가진 보험 상품이 출시되어 인기를 끌고 있다. 보험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목돈을 지급하는 종신보험은 보통 가장이 근로기간 중에 사망했을 때 유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많이 가입한다. 따라서 가장이 정년퇴직하고 나면 종신보험은 상대적으로 그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바꾸어 노후 생활 비로 활용하는 것이다.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해도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하다. 문제는 비과세 시점이다. 처음 종신보험에 가입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될까, 아니면 연금으로 변경한 다음부터 10년이 경

과해야 할까? 소득세법에서는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을 최초 납입일로 본다. 따라서 변경일로부터 10년 이상 보험 계약을 유지해야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 적립식 보험 계약의 경우 계약 변경 전을 포함해 전체 보험료 납입기간이 5년 이상 되어야 한다.

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요즘 판매되는 연금보험 상품은 대부분 보험료 증액 기능을 갖추고 있다. 즉 보험 가입자가 원하면 가입할 당시 정했던 것보다 더 많은 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이같이 추가로 납입한 보험료에서 늘어난 보험차익에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질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면 처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해야 할까, 아니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 할까?

추가 납입 보험료에 대한 비과세 여부는 추가 납입금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처음 가입할 당시 약정한 보험료의 1배 이내 범위에서 추가로 보험료를 증액한 경우에는 최초 보험료

를 납부한 날로부터 10년간 보험 계약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연금보험에 가입하면서 매달 20만 원씩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했다면 보험료를 40만 원까지 증액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료를 1배 이상 증액하는 경우에는 증액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축성 보험 계약 내용 변경과 비과세 요건

-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사망에 의한 변경은 제외)
→ 변경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 변경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 처음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해 증액하는 경우
→ 1배 초과하여 증액한 날로부터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26

연금을 상속하면 세금은 누가 얼마나 내나요?

이성계 씨(75세)는 요즘 막내아들 이방원 씨(47세)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국내 일류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할 때까지만 해도 한시를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어 사업을 하겠다고 회사를 그만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손대는 일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그때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손을 벌린다. 자식이니까 어쩔 수 없이 도와 주기는 하지만, 언제까지 다 큰 아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할지 고민이다. 일단 이번이 마지막이고 더 이상 사업 자금을 대줄 수는 없다고 으름장을 놓기는 했다. 하지만 이 상태대로라면 자신이 죽고 난 다음 상속받은 재산도 사업으로 탕진할 게 뻔하다. 이성계 씨는 본인이 죽더라도 어떻게든 아들만큼은 생활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즉시연금에 가입하기로 했다. 계약자와 수익자는 본인으로, 피보험자는 아들로 하고, 연금은 종신형으로 수령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피보험자인 아들이 살아 있는 동안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 이성계 씨가 살아 있는 동안 연금을 받아 본인 생활비로 쓰고, 죽은 다음에는 아들이 연금으로 생활할 수 있다. 게다가 연금 수령 방법을 종신형으로 선택하면 아들이 연금을 중도에 해지해 사업 자금으로 쓸 수 없다고 하니 한결 마음이 놓였다.

죽어서까지 가족 걱정이냐고도 하지만, 이성계 씨처럼 연금보험을 활용해 자녀와 배우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사람도 있다. 연금보험은 계약 당사자를 잘만 설정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노후 생활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동시에 상속세와 증여세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금보험의 계약 당사자와 상속·증여

연금보험 계약의 당사자로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다. 계약자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라면 수익자는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피보험자는 연금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다. 연금 수령 방법을 종신형으로 선택하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 수익자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연금보험에 가입하면서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를 각기 다른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계약자와 수익자 사이에 상속이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낸 계약자와 연금을 받는 수익자가 다를 경우, 계약자가 수익자에

게 돈을 준 셈이기 때문이다. 계약자가 살아 있을 때 이 같은 일이 있으면 증여가 되고, 계약자가 사망한 다음에는 상속이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자.

앞서 이성계 씨가 즉시연금에 가입하면서 본인을 계약자와 피보험자, 아들 이방원을 수익자로 지정하고, 연금 수령 방법은 종신형을 선택했다고 치자. 이렇게 되면 이성계 씨가 살아 있는 동안에도 아들 이방원 씨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 아들에게 연금을 준 셈이므로 증여에 해당한다.

이번에는 이성계 씨가 종신형 즉시연금에 가입하면서 본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지정하고 아들을 피보험자로 지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는 이성계가 살아 있는 동안은 세무상 별 다른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보험료를 낸 사람도 이성계 씨이고, 연금도 이성계 씨가 수령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아버지가 사망한 다음이다. 이 경우 피보험자인 이방원 씨가 여전히 살아 있기 때문에 보험 회사는 계속 연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수익자인 이성계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연금은 이성계 씨의 상속인이 수령하게 된다. 결국 이성계 씨가 사망하면서 연금을 상속인에게 물려준 것이므로 상속에 해당한다.

종신형 연금의 상속·증여 재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렇게 연금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재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할까? 연금은 당장 목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장래 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하는 것이므로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하는 별도의 평가 방법이 필요하다. 평가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둘 중 큰 금액을 상속·증여 재산 가액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미래에 정기적으로 받을 연금액을 평가 기준일 현재의 가치로 할인해 상속·증여 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증여일 현재 연금보험 계약을 해지해 일시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일시금이 앞서 평가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일시금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본다. 후자의 해지 환급금은 금융회사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현금 흐름 할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이해를 돕기 위해 이성계 씨의 사례로 돌아가보자. 이성계 씨가 즉시연금에 가입하면서 본인을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지정하고, 아들 이방원을 수익자로 지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렇게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처음 연금을 수령하는 때를 증여 시점으로 보고 이후 수령하는 연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증여재산의 가치를 평가한다.

이성계 씨가 연금 수령 방법을 종신형으로 선택했다면 피보험자인 이성계 씨가 살아 있는 동안 수익자인 이방원은 계속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렇게 특정 개인이 사망할 때까지 매년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는 것을 종신정기금이라고 한다. 종신정기금 평가에서 문제는 피보험자가 언제 사망할지 모른다는 데 있다. 이런 경우 수익자가 피보험자의 기대 여명까지 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보고, 미래에 받을 연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것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본다.

이번에는 계약자가 사망한 다음에도 상속인이 계속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성계 씨가 계약자와 수익자, 아들 이방원 씨가 피보험자로 된 종신형 연금이 여기 해당한다. 이때는 연금 수령 중 계약자가 사망해도 피보험자는 살아 있으므로 수익자인 이성계 씨의 상속인은 계속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이성계 씨가 연금을 수령할 권리를 상속인에게 물려준 셈이다. 상속재산 가치는 앞서 증여재산 가치를 평가할 때와 마찬가지로 미래에 수령할 연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 해서 평가한다.

중요한 것은 할인율이다. 최근 저금리의 영향으로 할인율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인데, 할인율이 떨어지면 증여재산 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할인율은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그 할인율은 3%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㉓

확정형 연금의 상속·증여재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이번에는 이성계 씨가 확정형 즉시연금에 가입하면서 본인을 계약자와 피보험자로 지정하고, 아들 이방원을 수익자로 지정했다고 가정해 보자. 아버지 이성계 씨가 살아 있는 동안 아들 이방원에게 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이다. 앞서 종신형 연금을 증여할 때와 다른 점은, 증여 시점에서 볼 때 연금 수령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 이렇게 잔존 기간이 정해진 연금을 유기 정기금이라고 한다.

유기 정기금 평가 방법도 종신정기금 평가 방법과 같이 두 가지다. 먼저 미래에 받을 연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밖에 상속 증여일 현재 확정형 연금을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으로 재산 가액을 평가할 수 있다. 이성계 씨가

확정형 즉시연금에 가입하면서 연금 수령 기간을 30년으로 정했다면 이성계 씨가 죽든 말든 이방원 씨는 30년간 연금을 받는다. 따라서 앞으로 30년 동안 받을 연금을 현재 가치로 할인하면 증여재산 가액을 산출할 수 있다. 할인율은 동일하게 3%를 적용한다. 다만 이렇게 평가한 금액이 1년치 정기 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확정형 연금의 증여재산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까? 종신행은 일단 연금이 개시되면 중도에 해지할 수 없지만, 확정형은 연금을 수령하는 중이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해지 환급금과 유기 정기금 평가 방식을 통해 평가한 금액 중 큰 것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본다.

정기적으로 받은 연금액의 상속·증여 재산 가액 평가 방법

유기 정기금 예) 확정형 연금	$\sum \frac{\text{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1 + \text{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율})^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율 : 3.0% • n : 평가기준일(상속·증여 개시일)로부터 경과 연수 • 유기정기금 평가액은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음
종신행 예) 종신행 연금	$\sum \frac{\text{피보험자가 기대 여명에 이를 때까지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1 + \text{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율})^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율 : 3.0% • n : 평가기준일(상속·증여 개시일)로부터 경과 연수

부록: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

-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 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 이자의 비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퇴직금의 지급 등) [시행일:2022. 4. 14.]

-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급여 종류 및 수급 요건 등)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및 납입 등)

- ⑥ 가입자는 퇴직할 때에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가 설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해당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가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 사업자는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정 기여형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따른 가입자에 대한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적립금의 중도인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3조의13 (적립금의 중도인출) [시행일 : 2022. 4.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금제도 사용자 부담금 계정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및 운영 등)

②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시행일 : 2022. 4. 14.)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3.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 제공 사유) ①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1의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

로 한정한다.

5.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에서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가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가. 근로자 본인
 - 나. 근로자의 배우자
 -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9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 사유)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가입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4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2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대상)

법 제24조제2항제3호에서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자영업자
2.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
4.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5.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6.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7.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 우체국 직원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 불산입)

-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직원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 ⑤ 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 ⑤영 제44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

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1. 유기정기금: 잔존 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1 + \text{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n: 평가 기준일로부터의 경과 연수

2. 무기정기금: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 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 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③ 영 제62조제1호의 계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30을 말한다.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가.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하 ‘공적연금 관련법’이라 한다)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퇴직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장해유족연금·상이유족연금·순직유족연금·직무상유족연금·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비공무상 장해연금·비직무상 장해연금, 상이연금(傷年金,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 나. 제21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연금 외 수령한 기타소득
9.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금소득 (다목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를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분리과세 연금소득’이라 한다)
 -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 수령하는 연금소득
 - 나.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의료 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의 보험차익은 제외한다.
 - 가.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 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 수령'이라 하며, 연금 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 외 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 나. 제59조의3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다. 연금계좌의 운용 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 외 수령한 소득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 ③ 퇴직소득 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

2019년 12월 31일부터 소급하여 3년(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 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2012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 기간 × 3 +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2020년 1월 1일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 환산액	2020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 기간 × 2
--	--	---	---------------------------------------

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 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

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와 그 계산식을 적용할 때 근무기간과 총급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근무기간: 개월 수로 계산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개월로 본다.

2. 총급여: 봉급·상여 등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을 합산한다.

⑥ 퇴직소득의 범위 및 계산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44조 (상속의 경우의 소득 금액의 구분 계산)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 외 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 금액은 상속인의 소득 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금계좌의 승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 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 원 + 50만 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 원 + 8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200만 원 + 12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2.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환산급여	공제액
800만 원 이하	환산급여의 100%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800만 원 + (800만 원 초과분의 60%)
7,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4,520만 원 + (7,000만 원 초과분의 55%)
1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6,170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	1억5,170만 원 + (3억 원 초과분의 35%)

②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 금액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소득 금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제를 '퇴직소득공제'라 한다.

④ 퇴직소득공제의 계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51조의3 (연금보험료 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을 납입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

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 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72만 원 +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582만 원 + (4,6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1,590만 원 +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760만 원 +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9,460만 원 +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억 7,460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10억 원 초과	3억 8,460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 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 세액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 금액이 4,0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 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000만 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 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전환 금액’이라 한다)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한다.
- ④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300만 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 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급으로 계상되는 소득
-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의2.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 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 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이(연금 수령일 현재)	세율
70세 미만	100분의 5
70세 이상 80세 미만	100분의 4
80세 이상	100분의 3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 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

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 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 연차 및 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연금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나. 연금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 외 수령 원천징수세율

의 100분의 60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소득세법 제143조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및 방법)

② 원천징수 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 금액에 제129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① 원천징수 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 외 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 정산)

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

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 ③ 퇴직소득 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항제9호나목에서 '의료 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계좌(이하 '연금계좌'라 한다)에서 인출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연금계좌 취급 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천재지변

나. 연금계좌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 이주

다.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한다]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라. 연금계좌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마.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결의 또는 파산 선고

2. 제40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충족한 연금계좌 가입자가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본인을 위한 의료비에 한정한다)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하기 위하여 해당 의료비를 지급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질병·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제9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보험’이란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을 말한다.

1.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저축성보험계약(제2호에 따른 저축성보험 및 제4항에 따른 종신형 연금보험은 제외한다)의 보험료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하인 저축성보험. 다만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이하 이 조에서 ‘최초 납입일’이라 한다)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10년 이상이지만 납입한 보험료를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2017년 3월 31일까지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2억 원

나.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1억 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가. 최초 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보험계약일 것

나. 최초 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일 것

다. 계약자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계약자가 가입한 모든 월적립식 보험계약(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기본보험료,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등 월별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한 합계액을 말한다]이 150만 원 이하일 것(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으로 한정한다)

④ 법 제16조제1항제9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이란 보험계약 체결시점부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종신형 연금보험을 말한다.

1.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을 것

2.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닐 것

3. 사망 시[「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 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이하 이 조에서 ‘기대 여명 연수’라 한다) 이내에서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하기로 보증한 기간(이하 이 조에서 ‘보증기간’이라 한다)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 시를 말한다] 보험계약 및 연금 재원이 소멸할 것

4.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하고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중도해지할 수 없을 것

5. 매년 수령하는 연금액[연금 수령 개시 후에 금리변동에 따라 변동된 금액과

이연^延하여 수령하는 연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frac{\text{연금 수령 개시일 현재 연금계좌 평가액}}{\text{연금 수령 개시일 현재 기대 여명 연수}} \times 3$$

- ⑥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계약과 2013년 2월 15일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대통령령 제24356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5조에 따라 종전의 제25조제1항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종전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제3호의 변경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해당 보험계약의 최초 납입일로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계약변경일까지의 보험료 납입기간은 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납입기간에 포함하고, 계약변경 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변경 이후에도 제3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자 명이가 변경(사망에 의한 변경은 제외한다)되는 경우
 2.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를 초과하여 기본보험료를 증액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 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공적연금소득의 계산)

- ①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적연금소득(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령한 공적연금에 대하여 공적연금의 지급자별로 2002년 1월 1일(이하 이 조와 제42조의2제1항에서 ‘과세 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공적연금소득 중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소득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frac{\text{과세기간 연금 수령액}}{\text{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times \frac{\text{과세기준일 이후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text{총 납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액}}$$

2. 그 밖의 공적연금소득

$$\frac{\text{과세기간 연금 수령액}}{\text{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 월수}} \times \frac{\text{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 월수}}{\text{총 기여금 납입 월수}}$$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 기준일(제2항에 따라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 기준일로 보아 계산한 경우에는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 이후에 법 제51조의3에 따른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이하 ‘과세제외기여금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을 공적연금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기준금액에서 뺀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①

2.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설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9호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다.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②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법 제59조의3제1항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제118조의3에 따라 연금계좌에 납입한 것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연금보험료’라 한다)으로 볼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의 금액을 납입할 것.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으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

가. 연간 1천800만 원

나. 법 제59조의3제3항에 따른 전환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2.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연금 수령 개시일을 사전에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

에 따른 개시일을 말한다)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0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 수령’이라 하며, 연금 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 외 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 제2호 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 제1항 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 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 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 수령으로 본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 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frac{\text{연금계좌의 평가액}}{(11 - \text{연금 수령 연차})} \times \frac{120}{100}$$

④ 제3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 수령 연차’란 최초로 연금 수령 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 연차로 하여 그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 수령 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

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 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2013년 3월 1일 전에 확정급여형퇴직 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6년 차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 수령 연차
- ⑤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 외 수령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연금계좌 인출 순서 등)

- ①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이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이하 '과세 제외 금액'이라 한다)
 2. 이연 퇴직소득
 3.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 ② 과세 제외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호는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해당하며, 확인되는 날부터 과세 제외 금액으로 본다.
 1. 인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2. 해당 연금계좌만 있다고 가정할 때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된 연금보험료로서 법 제59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액(이하 이 조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

- ③ 인출된 금액이 연금 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분이 먼저 인출되고 그다음으로 연금 외 수령분이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 ④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이내의 연금보험료는 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납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부터 제1항제3호 중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본다.
- ⑤ 연금계좌의 운용에 따라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은 원금이 제1항에 따른 인출 순서와 반대의 순서로 차감된 후의 금액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과세기준금액')으로 한다.
 1.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 가. 과세 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 이자
 - 나.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 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 ②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 금액'이란 퇴직소득 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

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 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 판정의 특례)

-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분할 등 조직 변경, 사업양도, 직·간접으로 출자 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 임원이 비상근 임원이 된 경우
 4.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 ② 계속 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경우(임원인 근로소득자를 포함하며, 이하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한다)에는 그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 (연금계좌의 승계 등)

-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소득 금액을 승계하는 날에 그 연금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0조의2제3항제2호의 연금계좌의 가입일은 피상속인의 가입일로 하여 적용한다.
-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승계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연금계좌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승계 신청을 받은 연금계좌 취급자는 사망일부터 승계 신청일까지 인출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피상속인이 인출한 소득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상속인이 인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과의 차이가 있으면 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 ④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제2항 전단에 따른 승계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을 인출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에서 사망일부터 사망 확인일까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을 피상속인의 소득세로 한다.
 1. 사망일부터 사망 확인일까지 인출한 소득
 2. 사망 확인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

- ① 법 제48조제1항 및 법 제55조제2항을 적용할 때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 또는 퇴직소득중간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②법 제4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납입 연수 또는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1조의10 (과세 제외 금액 확인을 위한 소득·세액공제확인서의 발급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연금소득자 등’이라 한다)이 과세 제외 금액(공적연금소득의 경우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어 이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은 후 그 확인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각종 연금 및 일시금을 수령하려는 사람
2.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려는 사람
3. 법 제21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기타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 의무자는 연금보험료 등의 납입액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과세 제외 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 의무자(연금계좌 취급자로 한정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제1항에 따른 세금우대저축자료 집중 기관을 통하여 연금소득자 등이 가입한 다른 연금계좌의 납입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금계좌의 과세 제외 금액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금계좌의 확인 대상 납입액과 다른 연금계좌의 확인 대상 납입액의 합계액이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2. 해당 연금계좌의 확인 대상 납입액
- ④ 제1항의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연금소득자 등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와 연금 납입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과 연금계좌 취급자는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⑤ 연금계좌 취급자는 연금소득자 등이 연금계좌를 해지한 이후에도 제4항에 따라 연금 납입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연금 납입 정보를 별도의 기간 제한 없이 보유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이연 퇴직소득 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① 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거나 환급하는 퇴직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이연 퇴직소득세’라 한다)는 다음의 계산식(환급하는 경우의 퇴직소득 금액은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frac{\text{퇴직소득 산출 세액}}{\text{퇴직소득 금액}} \times \frac{\text{법 제14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text{퇴직소득 금액}}$$

② 이연 퇴직소득을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frac{\text{연금 외 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세}}{\text{연금 외 수령한 이연퇴직소득}} \times \frac{\text{연금 외 수령한 이연퇴직소득}}{\text{연금 외 수령 당시 이연퇴직소득}}$$

③ 제2항의 계산식에서 ‘연금 외 수령 당시 이연 퇴직소득세’란 해당 연금 외 수령 전까지의 이연 퇴직소득세 누계액에서 인출한 이연 퇴직소득의 누계액(이하 이 항에서 ‘인출 퇴직소득 누계액’이라 한다)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을 말하

며, 인출 퇴직소득 누계액에 대한 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frac{\text{이연퇴직소득세 누계액}}{\text{이연퇴직소득 누계액}} \times \frac{\text{인출퇴직소득 누계액}}{\text{이연퇴직소득 누계액}}$$

- ④ 이연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이연 퇴직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연금외 수령한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3 (퇴직소득세의 환급 절차)

- ① 법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환급신청자’라 한다)은 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지급 또는 입금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이연 계좌 신고서를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연금계좌 취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이연 계좌 신고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원천징수 의무자는 제202조의2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환급할 세액으로 하되, 환급할 소득세가 환급하는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다만 원천징수 의무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환급되는 세액은 과세이연 계좌 신고서에 있는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는 방법으로 환급하며, 해당 환급 세액은 이연 퇴직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원천징수 의무자의 폐업 등으로 연금계좌 취급자가 과세이연 계

좌 신고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환급 세액을 환급신청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다.

- ④ 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거나 환급한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는 법 제164조에 따른 지급명세서를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퇴직소득 세액의 정산)

- 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제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 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 ③ 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이란 근로 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퇴직급여 적립 방법 등)

영 제38조제2항에서 ‘근로자가 적립 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립 방법을 말한다.

-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

는 근로자(임원 포함) 전원이 적립할 것. 다만 각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가. 사업장에 제2호에 따른 적립 방식이 최초로 설정되는 날(해당 사업장에 최초로 근무하게 된 날에 제2호의 적립 방식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 대상이 되는 날을 말한다)

나. 제2호의 적립 방식이 변경되는 날

2. 적립할 때 근로자가 적립 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적립 방식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적립할 것
3. 제2호의 적립 방식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또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의2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인공제회와 사용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
4. 사용자가 영 제40조의2 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 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

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000만 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 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 금액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또는 연장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

초판 1쇄 발행 2016년 8월 10일

2판 1쇄 발행 2018년 11월 10일

3판 1쇄 발행 2020년 4월 27일

4판 1쇄 발행 2021년 12월 27일

지은이 김동업 이동근

자문 서혜민

편집 몽스미디어

디자인 모스그래픽

펴낸곳 미래에셋투자자산연금센터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그랑서울 타워1 13층

전화 02-3774-2241

홈페이지 미래에셋투자자산연금센터(investpension.miraeasset.com)

등록 2009년 7월 27일 (제318-2009-000097호)

- copyright © 2021 by Mirae Asset Global Investments Co.
- 이 책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고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 이 책에 언급된 기업들은 해당 주제에 부합하는 사례로 제시되었을 뿐, 투자 추천이 아님을 밝힙니다.